

★ 추가 자료 ★

CALIFORNIA주

# 총선거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본 안내서는 첫 번째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의 추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유권자 안내서가 인쇄된 후 투표지에 추가된, 제안 1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

## 정확성 증명서

저, Debra Bowen California 주 총무처장관은, 본 안내서가 법에 준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제 손과 주의 인장으로, 2014년 9월 12일, California 주 새크라멘토에서 이에 서명함.

*Debra Bowen*



Debra Bowen  
총무처장관

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 추가 자료 ★



## 총무처장관

친애하는 유권자께,

최근 귀하께서는 11월 4일 총선거를 위한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으셨습니다. 입법부 발의 법안을 투표지에 게재할 수 있는 마감일은 6월 26일 이었습니다. 마감일 후, 의회와 주지사는 제안 1을 투표지에 추가했습니다. 하여 저희 팀은, 이 추가 투표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귀하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추가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선거에는 귀하의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같은 날 우편함에 배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귀하께서 시간을 내어 투표지에 있는 여섯 개의 주 전체 법안들을 모두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지역에만 해당되는 후보자와 법안에 대한 정보는 귀하의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에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상태 확인 방법, 투표소 찾기, 또는 우편 투표지 수령 확인과 같은 자세한 선거 관련 정보는 [www.sos.ca.gov/elections](http://www.sos.ca.gov/elections) 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866) 575-1558 문의 바랍니다.

모든 등록 유권자는 우편 투표로, 또는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28일까지는 해당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우편 투표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본 두번째 유권자 안내서에는, 법무부장관 Kamala D. Harris 가 작성한 추가 투표 법안의 제목 및 개요와, 입법 분석가 Mac Taylor 가 작성한 투표 법안의 공정 분석과 납세자들에게 부과될 잠재적 비용, 찬성자들 및 반대자들이 작성한 투표 법안에 대한 찬반론과, 의회 법무관 Diane F. Boyer-Vine 이 작성하고 감수한 제안 법 본문, 그리고 기타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주정부 인쇄책임자인 David Gerald "Jerry" Hill 의 감독 하에 인쇄되었습니다.

# 목차

---

|   |    |
|---|----|
| 간편 참조 안내서                                       | 5  |
| 제안  |    |
| 1 수도 공채. 수질, 급수, 용수 처리 및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 | 6  |
| 주 공채 채무 개요                                      | 12 |
| 법안 본문   | 14 |
| 유권자 권리 장전                                       | 31 |
| 정보 페이지  |    |
| 투표소 확인하기 .....                                  | 4  |
| 투표 방법 .....                                     | 4  |
| 추가유권자 안내서 .....                                 | 5  |
| 온라인 자원 .....                                    | 5  |
|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                | 5  |
| California주 선거 .....                            | 28 |
| 선거 절차: 대법원 판사 .....                             | 29 |
| 카운티 선거 사무소 .....                                | 30 |

---

귀하의 유권자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31 페이지를 참조해주시오.

---

---

## 유권자 등록

이름,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바꾸거나 정당을 변경, 또는 선택하려면 유권자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투표 등록이 온라인 양식([RegisterToVote.ca.gov](http://RegisterToVote.ca.gov))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는 대부분의 우체국, 도서관, 시/카운티 정부기관 및 California주 총무처장관실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 확인하기

투표소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들에 의해 설치됩니다. 선거일 몇 주 전에 우편으로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를 받으면, 뒷표지에서 투표소 주소를 확인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이후에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에는 예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카운티 선거 사무소가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투표소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총무처장관 웹사이트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http://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 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문의 하십시오.

선거일에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됩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줄을 서면 여전히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임시 투표지로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투표지는 보통 투표지처럼 보이지만 특수 봉투에 넣습니다. 귀하의 임시 투표지는 카운티 선거 공무원이 귀하가 등록된 유권자이고 해당 선거에 이미 투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집계됩니다.

임시 투표지 투표는 유권자로 등록된 카운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

---

## 투표 방법

투표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내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상에 있는 모든 경선에 대해 투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투표는 귀하가 투표하는 각 경선에 대해 집계될 것입니다. 귀하의 투표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안내서의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소 요원이 귀하의 성함을 물은 다음, 해당 투표소의 공식 등록 유권자 명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명부에 있는 이름 옆에 서명을 하면, 투표소 요원이 해당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투표 시스템에 따라 투표지, 고유 패스코드 또는 컴퓨터 메모리 카드를 지급합니다. 개별 기표소로 가서 투표를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도 투표소 요원이 유권자들을 도와줍니다. 투표지에 어떻게 표시할 지 잘 모르겠으면, 투표소 요원에게 안내를 요청합니다.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소 요원에게 정정하는 방법을 묻거나 새 투표지를 요청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투표소는 장애 유권자도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선거법과 유권자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변경할 필요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우편 투표

우편 투표지에 기표한 후,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서 제공한 공식 봉투에 넣어 밀봉합니다. 봉투 겉면 서명란에 서명합니다. 반드시 투표지가 기한 내에 도착하도록 다음과 같이 반송합니다:

- 우편 발송할 경우, 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소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거일 며칠 전에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십시오.
- 직접 전달할 경우, 선거일 오후 8시 이전에 카운티 선거 사무소나 카운티의 아무 투표소에 가져다줍니다.

우편 투표지를 받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를 투표소로 가져와서 투표소 요원에게 주고 투표소용 투표지로 교환하면 됩니다. 우편 투표지가 없으면 임시 투표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참조 안내서

발의안 1 수도 공채, 수질, 급수, 용수 처리 및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개요 **의회에 의해 투표에 부쳐짐**

지표 및 지하수 저장, 생태계와 유역 보호 및 복원, 그리고 식수 보호를 포함하여 주 정부 급수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일반 의무 공채에 75억 4천5백만 달러를 인가. 재정적 영향: 주 공채 비용이 40여년 동안 연평균 3억 6천만 달러 증가. 향후 수십년동안 연평균 수익 달러로 예상되는 지방 정부 수도 관련 프로젝트의 비용 절감.

## 찬반 투표의 의미

**찬성** 본 법안에 대한 찬성 투표의 의미: 주는 자원 관련 사용과 관련해 종전에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4억 2천 5백만 달러의 미판매 일반 공채를 전용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수도 관련 프로그램들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71억 달러의 추가 일반 공채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 본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의 의미: 주는 다양한 수도 관련 프로그램들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71억 달러의 일반 공채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유권자들이 종전에 승인했던 4억 2천 5백만 달러의 미판매 일반 공채들은 계속해서 자원 관련 사용 용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 찬반론

**찬성** 제안 1 은 특히 가뭄기 동안 농장과 기업, 커뮤니티들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환경을 보호해줍니다. 이것은 재정적 책임성이 있고, 종합적인 주 수도 계획의 지도에 따르며,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의합니다: 제안 1에 찬성투표 하십시오!

**반대** California는 제안1의 부적절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뭄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지역 수도 자가 효율성을 개선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과 시내를 위협합니다. 민간 수도 이용자들은 이들 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납세자들 또한 그래서는 안됩니다. 제안 1 은 학교와 의료, 도로와 공공 안전을 위한 기금을 잡아먹습니다. 반대투표 하십시오!

## 추가 정보 연락처

**찬성**  
Tom Willis  
Yes on Propositions 1 and 2  
2355 Broadway #407  
Oakland, CA 94612  
(510) 210-5001  
INFO@YesonProps1and2.com  
YesonProps1and2.com

**반대**  
제안에 대한 반대 1  
(209) 475-9663  
info@NoonProp1.org  
www.NoonProp1.org

# 추가 유권자 안내서

본 안내서에는 첫 번째 유권자 안내서가 인쇄된 후 투표지에 추가된 제안 1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총무처장관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요:

- 선거 운동 기부금과 로비 활동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cal-access.sos.ca.gov>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유권자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www.voterguide.sos.ca.gov](http://www.voterguide.sos.ca.gov)
- 선거일에 투표할 투표소를 확인하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http://www.sos.ca.gov/elections/find-polling-place.htm)
- 우편 투표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http://www.sos.ca.gov/elections/elections_m.htm)
- 투표에 처음 참가하는 유권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읽어보십시오  
[www.sos.ca.gov/elections/new-voter](http://www.sos.ca.gov/elections/new-voter)
- 선거일에 투표가 마감된 후 선거 결과를 생중계로 보십시오  
<http://vote.sos.ca.gov>

## 주 전역 후보자와 투표 법안에 대한 상위 기부자

위원회가 투표 법안 또는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며 최소 1 백만 달러를 모금하면, 위원회는 이들 상위 10명의 기부자들을 캘리포니아주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FPPC)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상위 10명이 바뀌면 명단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 리스트는 FPPC 웹사이트 [www.fppc.ca.gov/top10Nov2014](http://www.fppc.ca.gov/top10Nov2014) 나 [www.fppc.ca.gov/candidateNov2014](http://www.fppc.ca.gov/candidateNov2014)에 게시됩니다.

**수도 공채. 수질, 급수, 용수 처리 및 저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 지표 및 지하수 저장, 생태계와 유역 보호 및 복원, 식수 보호, 급수 관리, 용수 재활용 및 고급 용수처리 기술, 그리고 홍수 제어 등 주 정부 급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 공채에 71억 2천만 달러를 인가.
- 동일 목적을 위해 기존 수도 공채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은 공채 권한 4억 2천 5백만 달러를 재활당.
- 일반 기금의 자금으로 공채 지불을 충당.
- 공채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비 주 정부 출처로부터 상응 보조금을 제공하는 특정 프로젝트의 요구.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순 재정적 영향에 대한 입법 분석가의 추정 요약:**

- 향후 40여 년 동안 연평균 3억 6천만 달러 증가한 주 공채 상환 비용.
- 향후 수십 년간 연평균 수억 달러로 예상되는 지방 정부 수도 관련 프로젝트 비용의 절감.

| 주 정부 공채 비용 견적 |           |
|---------------|-----------|
| 인가된 신규 차입금    | 71억 달러    |
| 연 평균 공채 지불 비용 | 3억 6천만 달러 |
| 예정 상환 기간      | 40년       |
| 상환금 출처        | 일반 세수     |

**AB1471 (제안 1) (188장, 2014년 제정법)에 대해  
주의회에 의해 행해진 최종 투표**

|     |       |      |
|-----|-------|------|
| 상원: | 찬성 37 | 반대 0 |
| 하원: | 찬성 77 | 반대 2 |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배경**

**California 수원.** 주의 물 대부분은 강에서 끌어오며, 상당수가 북 California와 시에라 네바다 산 위의 눈에서 옵니다. 지하에 있는 물 ("지하수"라 일컫음)은 주의 수도 사용량의 약 삼분의 일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가문 해에는 특히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주의 전체 용수 중 기타 수원에서 조달되는 양은 적으며, 빗물을 받아두거나, 폐수를 재사용 (용수 재활용) 하거나, 해수에서 소금기를 제거하는 (담수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됩니다.

**주의 물 필요 충족.** 환경을 보호하면서 California 전체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일은 몇 가지 주요 도전과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물은 필요한 곳에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 California에서 오는 물은 센트럴 밸리 (Central Valley)의 농지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남 California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 등과 같은 주의 곳곳으로 공급됩니다. 둘째, 제공 가능한 수도량은 해마다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문 해 동안 제공 가능한 수도량이 적어지면 주 전체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량의 물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및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습지와 같은 멸종 위기 동식물들을 위한 자연 서식지 보호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비가 매우 많이 오는 해에는 종종 주에, 특히 센트럴 밸리에 홍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셋째, 물이 오염이 될 때가 있어, 식수나 농지 관개수, 또는 어류 서식지 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해지기도 합니다. 넷째, 주의 수계 일부는 자연 서식지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식수와 관개수로 더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한 것이 어류를 위한 용수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California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구축했습니다. 몇몇 프로젝트들은 송수관, 펌프장, 수로뿐만 아니라 자연 하천을 사용하여 주 전체에 걸쳐 식수와 농농업 용수를 공급합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필요할 때를 대비해 물을 저장하는 댐과 다른 종류의 저수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방식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물 관련 문제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타 프로젝트로는 식수와 폐수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정수 처리장과, 태풍 때 유출된 물을 정수하는 시스템, 홍수 방지용 제방 등이 있습니다.

**환경과 수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수계와 환경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관개수와 식수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어류와 야생 동물의 자연 서식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서식지에 대한 이러한 영향들은 오염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어류와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을 위한 수질을 해치게 됩니다. 주는 자연 서식지와 수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야생 식물들과 동물들을 다시 들여오으로써 분수령 (육지에서 바다 호수 등의 수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을 복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는 또한 어류들이 필요로 할 때 강에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수계 내 다양한 정부의 역할.** 주, 연방 및 지방 정부들은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내 수도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부분의 지출은 수도 지구, 시, 카운티와 같은 지방 단위에서 이뤄집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 정부들은 급수 및 폐수 처리에 연간 약 26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 중 약 80퍼센트는 개인 요금 납부자들이 낸 상하수도세에 의해 충당됐습니다. 또한 지방 정부들은 주 기금, 연방 기금, 지방세를 비롯한 기타 수입원을 이용해 프로젝트 비용들을 지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공공 수도 기관들로부터 물을 공급받지만, 전체 California 주민들 중 약 육분의 일은 사설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는 이들 프로그램들을 (1) 주 내에서 물을 보존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2)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3) 홍수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4)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는 지방 정부들과 비영리 단체들, 사유 수도 회사들에게 가는 보조금 및 대출금 뿐 아니라 직접 지출을 통해서도 이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이들 주 프로그램들을 위한 자금은 보통 공채와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2000년부터 유권자들은 물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인 용도에 쓰일 200억 달러의 공채를 승인해왔습니다. 현재 이들 공채 중 약 9억 달러 (5 퍼센트)만이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제안**

이 법안은 다양한 수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위해 총 75억 달러의 일반공채를 발행합니다. 첫째, 이 법안은

주가 추가 공채 71억 달러를 매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이 법안은 수도 및 기타 환경적 용도로 유권자들이 이전에 승인한 미판매 채권 4억 2천 5백만 달러를 전용합니다. 주는 주의 일반 기금을 사용해 이들 공채를 이자와 함께 상환합니다. (일반 기금은 주의 주요 운영 계좌로, 교육, 교도소, 의료 및 기타 서비스들의 비용이 여기서 나갑니다.)

**기금의 사용**

그림 1 (다음장 참조)에 보여지고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공채 법안은 (1) 수도 공급을 늘리고, (2) 분수령을 보호 및 복원하고, (3) 수질을 향상시키고, (4) 홍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합니다. 이 공채 기금은 주 기관들이 다양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 정부, 사설 수도 회사, 상호 수도 회사 (수도 사용자들이 회사를 소유하는), 인디언 부족,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대출금과 보조금으로도 제공됩니다.

**수도 공급을 위한 기금 (42억 달러).**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약 42억 달러가 수도 공급 향상 프로젝트들에 지급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채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규 저수 시설을 위한 27억 달러.** 본 공채는 댐과 지하수 보충 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신규 저수 프로젝트들 비용의 최대 절반까지 지불할 27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서식지 복원, 수질 향상, 홍수 피해 감소, 응급 대응, 유원지 개선을 포함한 저수 프로젝트들과 연관된 "공익"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은 프로젝트 비용의 지불 책임은 저수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지방 정부들 및 기타 기관들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사익 (자사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물과 같은) 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 **지역 수도 프로젝트들을 위한 8억 1천만 달러.** 이 공채는 또한 지방 커뮤니티들에 의해 개발된 특정 계획들에 포함된 지역 프로젝트들을 위한 8억 1천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어류 서식지 보호 및 홍수 방지와 같은 기타 혜택 뿐 아니라 수도 공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되는 기금에는 주 전역의 특정 지역들에 할당되는 5억 1천만 달러와, 특정 종류의 상수도를 위한 3억 달러가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도심 지역의 태풍으로 인한 유출물 관리 계획 및 프로젝트, 그리고 수도 보존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물 재활용을 위한 7억 2천 5백만 달러.** 이 공채는 나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폐수나

# 1

##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바닷물을 처리하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7억 2천 5백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기금은 새로운 처리 기술을 실험하고, 담수화 시설을 짓고, 재활용수를 운반하는 배수관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분수령 보호 및 복원을 위한 기금 (15억 달러).** 이 기금은 주 전역의 분수령과 기타 서식지를 보호 및 복원하는 목적의 프로젝트들의 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금은 야생의 위협받는, 또는 멸종 위기의 어류 및 야생동물들을 지원하는 수역을 복원하고, 보존 목적의 땅을 매입하고, 분수령 내 산불 위험을 줄이고, 야생동식물을 위한 물을 매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 내 지정 지역들 안의 분수령들을 복원하기 위한 (정확히 새크라멘토-샌호아킨 강 삼각주 [삼각주] 내 프로젝트를 위한 1억 4천만 달러를 포함) 5억 1천 5백만 달러와, 환경 복원 자금 지원을 위한 주 정부의 특정 활동비를 지불하기 위한 4억 7천 5백만 달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금은 서식지와 분수령 복원 프로그램들과 (3억 5백만 달러), 물의 구매 등을 통해 강과 시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늘리는

프로그램 (2억 달러)을 진행하려는 주 전체의 신청자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 개선을 위한 기금 (14억 달러).** 이 공채는 지하수와 지표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14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절반 이상 (8억 달러)이 식수원이거나, 한때 식수원이었던 지하수의 오염 방지 및 정화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것입니다. 남은 기금은 (1) 깨끗한 식수의 이용성 향상 (2억 6천만 달러), (2) 소규모 커뮤니티들의 폐수 처리비 지원 (2억 6천만 달러), (3) 지방 정부들이 각자의 지하수 공급량 및 수질 관리 계획들을 수립 및 실행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1억 달러) 하는 데 제공될 것입니다.

**홍수 방지를 위한 기금 (3억 9천 5백만 달러).** 이 공채는 주를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를 개선해주는 프로젝트들에 3억 9천 5백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기금 중 1억 달러는 주 어느 곳에서든 홍수 통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으며, 2

그림 1

### 제안 1 공채 기금의 사용

(단위: 백만)

|  |                 |
|--|-----------------|
| <b>수도 공급</b>                                     | <b>4,235 달러</b> |
| • 댐 및 지하수 저장 - 공익과 관련한 비용 부담.                    | 2,700 달러        |
| • 다수의 수도 관련 개선 (빗물 보존 및 포획 포함)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프로젝트. | 810             |
| • 담수화를 비롯한 물 재활용.                                | 725             |
| <b>분수령 보호 및 복원</b>                               | <b>1,495 달러</b> |
| • 주 내 지정 지역들 내에서의 분수령 복원 및 서식지 보호.               | 515달러           |
| • 환경 복원을 위한 주의 특정 활동들.                           | 475             |
| • 주 전체 신청자들에게 제공 가능한 복원 프로그램.                    | 305             |
| • 강 및 시내로 유입되는 물의 양 증가 프로젝트.                     | 200             |
| <b>지하수 및 지표수 수질 개선</b>                           | <b>1,420달러</b>  |
| •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 800달러           |
| •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식수 프로젝트.                          | 260             |
| • 소규모 커뮤니티들 내의 폐수 처리.                            | 260             |
| •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방 계획 및 프로젝트.                       | 100             |
| <b>홍수 방지</b>                                     | <b>395달러</b>    |
| • 삼각지 내의 제방 수리 및 개선.                             | 295달러           |
| • 주 내의 홍수 방지.                                    | 100             |
| <b>총</b>   | <b>7,545 달러</b> |



입법 분석관에 의한 분석

계속

억 9천 5백만 달러는 제방을 개선하거나 삼각지 내의 홍수 응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따로 비축됩니다.

기금의 지출 및 할당에 대한 자격 요건

**프로젝트의 선정 방식.** 본 법안은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선정되고 공채 기금을 받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개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alifornia 수도 위원회 - 기존의 주 계획 및 규제 기관 - 가 어떤 저수 프로젝트들이 본 용도를 위한 공채 기금 27억 달러를 받게 될지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 기금 지출을 위해 주의 예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본 법안에 명시된 모든 기타 기금들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연간 주 예산 절차에서 주의 각 기관들에 기금을 할당합니다. 의회가 주 기관들에게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이 선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방향 제시를 해줄 수는 있지만, 본 법안은 의회가 특정 프로젝트들에 기금을 할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 기관들이 프로젝트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본 법안에 있는 그 어떤 기금도 삼각지에서 물을 운반하는 수로 또는 터널을 건축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용 보조금을 위한 자격 요건.** 본 법안에 의해 제공되는 75억 달러의 기금 중 57억 달러는 본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제공하는 수령자들 (대부분 지방 정부)에게만 지급 가능합니다. 이 상용 보조금의 자격 요건은 본 법안에 의해 기금이 지원되는 수도 공급 및 수질 프로젝트들에만 적용됩니다. 상용 보조금의 요구 부담액은 일반적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0 퍼센트이며, 몇몇 경우 이 금액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재정상 영향

**주 정부에 대한 재정상 영향.** 본 법안은 주의 일반 세입을 이용해 이자와 함께 상환받을 투자자들에게 주가 추가 일반 공채를 매각함으로써 최대 71억 달러까지 차용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저희는 (1) 공채들의 이자율은 평균적으로 5퍼센트를 조금 상회할 것이고, (2) 이 공채들은 향후 십 년 동안 판매될 것이며, (3) 30년 기간에 걸쳐 상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본 공채들의 상환을 위해 납세자들에게 부담될 비용은 향후 40년 동안 연 평균 약 3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주 일반 기금 예산의 0.3% 정도에 해당합니다. 저희는 유권자들이 이전에 승인한 법안에 따른 미판매 공채금 4억 2천 5백 달러를 전용하는 것이 주의 예상 채무 지불액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본 법안 없이 이 공채들은 다른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에 매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의 공채 사용과 이 제안된 공채 법안이 주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본 안내서의 나중에 나오는 "주 공채 부채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지방 정부들에 미치는 재정상 영향.** 지방 수도 프로젝트들을 위한 주 공채 기금의 제공은 지방 정부들, 주로 수도 기관들이 수도 프로젝트들에 얼마를 지출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주 공채 제공은 지방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주 공채 기금들이 어짜피 지방 정부들이 해당 프로젝트들에 썼어야 하는 비용들을 대체해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수원을 이용해 물 구매량을 줄여주는 등을 통해 운영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프로젝트들을 지방 정부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 공채 기금이 제공되면 지방 예산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주 공채 기금이 지방 정부들의 수도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공채 기금의 제공이 몇몇 지방 정부들로 하여금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또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이 법안이 지방 정부들의 수도 관련 프로젝트 비용을 절약해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절약된 비용은 향후 몇 십년 동안 연 평균 약 2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개별 지방 정부는 이 절약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새로운 시설들을 짓거나 기존 시설들의 유지보수 및 수리에 이 절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 정부는 이 절약비를 가지고 미래의 요금 인상을 늦추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수도세를 원래 계획보다 낮게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건, 한 해 동안 주 전체에서 절약된 금액은 지방 정부들이 물에 지출하는 전반적인 금액에 대비해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금 납부자들을 위한 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 콘테스트에 기부된 자금을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http://cal-access.sos.ca.gov>  
**를 방문하십시오.**

# 1

## ★ 제안 1에 대한 찬성론 ★

제안 1에 대한 찬성 투표는 극심한 가뭄 동안 농장과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인 수도 공급을 보장해줌으로써 경제와 환경 모두를 보호해줍니다.

California는 수년에 걸친 극심한 가뭄 상태이며 낙후된 수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California 전역의 지도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힘을 합쳐, 이 재정적으로 책임성 있는 법안을 투표에 부치게 된 이유입니다.

제안 1에 대한 찬성 투표는 종합적인 주 수도 계획을 지지합니다.

• 모든 커뮤니티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 • 저수 용량 확대 • 우리의 농장 및 기업들이 가뭄 해 동안 필요한 용수를 공급받도록 보장 • 가뭄에 대한 대비 및 관리 • 물 보존과 재활용, 향상된 지방 상수도에 투자 • 홍수 방지 강화 • 지하수 정화에 자금 지원 • 오염된 강과 시내 정화 • 어류 및 야생 동물을 위한 환경 복원

제안 1에 대한 찬성투표는 재정적으로 책임성이 있습니다. 제안 1은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프로젝트들에 꼭 필요한 것으로만 구성된 투자이며, 감당 못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이것은 미판매 공채 기금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기금을 재분배해줍니다.

제안 1에 대한 찬성투표는 California의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California의 경제는 안정적인 수도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제안 1은 우리의 수도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의 가족 농장들과 기업들의 생산성을 지켜주고, 물을 저장, 운반, 처리할 신규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California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줍니다.

제안 1에 대한 찬성투표는 우리의 기존 수도 공급을 보호해줍니다.

제안 1은 빗물이나 눈이 충분치 않은 해에 추가로 물을 공급해줌으로써 가뭄 시 중요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제안 1은 물 재활용과 효율성 개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기존 상수도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안 1은 물이 오염된 커뮤니티들에 깨끗한 식수를 위한 기금을 제공해줍니다.

제안 1에 대한 찬성투표는 물이 있을 때 저장해줍니다. 제안 1은 신규 저수 시설에 투자하여 계속해서 California에 문제가 될 가뭄이 든 해 동안 저장이 가능한 물의 양을 높여줄 것입니다.

제안 1에 대한 찬성투표는 환경을 보호해줍니다. 제안 1은 California의 강과 호수, 시내를 오염과 공해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어류 및 야생 동물 자원들을 복원해줍니다.

제안 1은 기금이 제대로 지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례 감사와 감독, 공공 정보 공개를 비롯한 엄격한 책임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안 1에 대한 찬성 투표는 다음을 포함한 공화당, 민주당, 농부, 지방 수도 공급자, 보호 단체, 기업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습니다:

• 미 연방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 (다이앤 페인스타인) • 미 연방 상원의원 Barbara Boxer (바바라 박서) • California 조류보호협회 (Audubon California) • California 주 상공회의소 • 삼각주 카운티 연합 (Delta Counties Coalition) • LA 지역 상공회의소 • 덕스 언리미티드 (Ducks Unlimited) • 미 강 협회 (American Rivers) • 실리콘 밸리 리더십 그룹 (Silicon Valley Leadership Group) • 프리앙 수도청 (Friant Water Authority) • 샌디에고 수도청 (San Diego Water Authority) • 남 California 대도시 수도 지구 • 천연 자원 보호협의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 북 California 수도 협회 • California 주 건설업 위원회 (State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s Council of California) • California 주 수도국 협회 (Association of California Water Agencies) • 프레즈노 관개수 지구 (Fresno Irrigation District) • 웨스턴 그로워스 (Western Growers)

Edmund G. Brown Jr. (에드먼드 G. 브라운 Jr.), 주지사

Paul Wenger (폴 웡거), California 농업 협회 대표

Mike Sweeney (마이크 스위니), 국제 자연보호 협회

(The Nature Conservancy) California 디렉터

## ★ 제안 1 찬성론에 대한 반박론 ★

제안 1에 반대투표 해주십시오

우리의 노후되고 새는 수계를 고치고 지하수를 정화함으로써 California의 물 사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집중하는 대신, 제안 1은 27억 달러에 이자까지 더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댐을 짓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댐들은 California 수도 공급량을 단 1% 만 증가시킬 뿐이며, 수십년간 사용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물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가장 비용이 적은 일 - 기존의 상수도를 더욱 잘 활용하고 즉각적인 장기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안 1은 납세자들에게 부당합니다. 실제 혜택을 받고 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댐의 비용을 대지 않겠다면, 왜 납세자들이 끔찍없이 이들 댐으로 인한 부채를 갚아야만 합니까?

제안 1은 가뭄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 수도 자가 효율성을 키우지 못하거나 이미 물이 부족한 삼각주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값비싼 신규 댐들은 장기 가뭄과 물 공급이 줄어든 시기에 트리니티, 클라머스, 새크라멘토 강들로부터 새로운 물을

전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들 강들은 전체 서부 해안과 California에게 있어 중요한 멸종 위기의 언어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제안 1은:

- 환경과 우리의 강, 언어들에게 안 좋습니다;
-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물을, 가뭄이 장기 지속되고 있어 필요한 '지금' 생산해주지 않습니다;
- 납세자들에게 부당합니다; 그리고
- California에게 있어 부당한 거래입니다.

제안 1에 반대투표하는 일에 동참해주십시오

주 하원의원 Wesley Chesbro (웨슬리 체스브로), 천연자원위원회 회장

Adam Scow (아담 스코우), 식품 및 물 보호단체 (Food & Water Watch) California 디렉터

Zeke Grader (제키 그레이더), 상임 이사태평양 연방 어부 협회 (Pacific Coast Federation of Fishermen's Associations)

# 1

## ★ 제안 1에 대한 반대론 ★

제안 1에는 물의 보존, 효율적인 재사용 및 재활용, 분수령 복원 등 많은 장점들이 있으나,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한 혜택보다는 심각한 약점들이 더 많습니다.

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한 수도 공채는 많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이 공채 법안은 California 주민들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제안 1은 더 많은 댐을 건설하는데 잘못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 75억 달러 중 삼분의 일 이상이 지표면 저류로 배정돼있는데, 이는 거의 분명하게 새로운 댐을 의미하며, 이는 곧 트리니티, 클래머스, 새크라멘토 강을 비롯한 북 California 강들로부터 더 많은 물을 과잉 양수하여 전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장기 가뭄으로 인해 기존의 눈으로 생겨난 수원이 크게 줄어들었을 때 그들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건설이 예상되는 이들 댐을 위한 27억 달러는 새롭게 물을 생산해내지 않을 것입니다. California 내 가장 생산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댐 건설 부지들은 이미 모두 개발됐습니다. 제안 1의 신규 댐 프로젝트들은 건설에 거의 90억 달러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California 총 수도 공급량을 단 1% 밖에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이들 댐은 수십년간 사용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 저수 프로젝트들 중 가장 중요한 시도 중 하나로, 이들 신규 댐 및 저수지의 비용은 주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될 것이며, California 납세자들은 해마다 일반 기금에서 5억 달러씩을 잡아먹는 공채 지불의 부담을 나눠 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주 수도 프로젝트의 자금이 되어주었던 1960년 공채법은 수혜자들이 수도요금을 통해 이 비용들을 지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약 민간 수도 이용자가 이들 프로젝트에 스스로 기금을 대지 않는다면,

납세자들도 공사에 동의하고 나중에 더 높은 요금을 내고 물을 구입하도록 요구당해서는 안됩니다. 납세자들이 아니라 수혜자들인 민간 수도 이용자들이 이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가뭄이 심해질수록 California 해안의 어장들과 California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의 북부 강들은 멸종 위기의 끝에 놓인 연어 종류들의 마지막 남은 몇 안되는 피난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강들은 전체 주와 서부 해안 위 아래에 있어 중요한 물고기들의 중요한 산란 서식지가 되어줍니다. 이 수도 공채는 북부 해안과 California 를 부당 대우하는 것입니다.

제안 1 하에서 저수 기금은 중부 및 북부 해안 지역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저수 기금이 주 내 한정된 지역, 주로 샌 호아킨과 새크라멘토 밸리, 남 California 지역에만 혜택을 주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안 1은 잘못된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 가뭄 해소에 약간의 도움밖에 안 되며, 필요로 하는 지역 수도 자가 효율성을 충분히 촉진시키지 않거나, 이미 물이 부족한 삼각주 생태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저수지와 무너지는 대수층을 통해 증명되었듯, 저수에 돈을 쓴다고 더 많은 비와 눈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제안 1에 대한 반대투표에 동참해주시고.

- 주 하원의원 **Wesley Chesbro** (웨슬리 체스브로), 천연자원위원회 회장
- Conner Everts** (코너 에버츠), 상임 이사 남가주 분수령 동맹 (Southern California Watershed Alliance)
- Barbara Barrigan-Parilla** (바바라 배리간-팔리아), 삼각주 복원회 (Restore the Delta) 상임이사

## ★ 제안 1 반대론에 대한 반박론 ★

제안 1에 찬성투표 하십시오

반대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이 수도 공채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가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 십년간 정치인들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동안에도 물에 대해 공방만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해결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제안 1, 이것은 주 내 모든 지역의 공화당, 민주당, 기업, 농부, 환경보호자, 근로자, 신문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원에서 만장일치 투표된 것을 비롯, 양당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구수는 California 수도 프로젝트가 출범된 이래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우리는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습니다. California의 수계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방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 커뮤니티들은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하며, 강물은 마르고 있고, 농부들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제안 1은 재정적으로 신중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올리지도, 정치인들의 배를 불리는 프로젝트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제안 1은 수질, 홍수 방지, 자연 서식지와 같은 공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제안 1은 정치인들이 아닌 과학자들이 작성한 균형잡힌 계획에 근거한 옳은 일에 투자합니다.

저수는 핵심적이며, 우리는 30년간 새로운 저수 시설을 추가한 적이 없습니다. 제안 1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저수 프로젝트들에만 주의깊게 투자합니다.

주 전역의 신문들이 제안 1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주의 모든 지역에 혜택을 베풀 수도 인프라 및 처리에 대한 투자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잡아 준다. . ." —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San Francisco Chronicle*).

"문제 해결을 진정으로 도와줄 공채 제안." — 모데스토 비 (*Modesto Bee*).

제안 1에 찬성투표 해주십시오!

**Edmund G. Brown Jr.** (에드먼드 G. 브라운 Jr.), 주지사

본 섹션에서는 주 공채 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섹션은 또한 제안 1 (75억 달러 수도 공채 제안)이 주 공채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논합니다.

**배경**

**공채란 무엇입니까?** 공채는 정부 및 회사가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는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계획, 건설, 개축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는데 주로 공채를 사용합니다. 주는 이들 프로젝트들에 대한 "선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채를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가 인프라 기금 지원을 위해 주가 사용하는 두 가지의 주요 공채 종류는 일반 공채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만 함)와 임대 수익 공채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 일반 공채와 임대 수익 공채는 일반 기금을 통해 상환됩니다. 일반 기금은 주의 주 운영 계좌로서, 주의 교육, 교도소, 의료 및 기타 서비스들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반 기금은 주로 소득 및 판매세 수입을 통해 조달됩니다.

**공채 지원 대상 및 공채 사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는 일반적으로 도로, 교육 시설, 교도소, 공원, 수도 프로젝트 및 사무실 건물과 같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공채를 사용합니다. 주 공채는 병원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택과 같은 특정 종류의 민간 인프라 자금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왔습니다. 공채를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반 시설이 대개 수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비용을 현재 및 장래 납세자들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므로 한번에 지불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채 기금 지원 비용은 무엇입니까?** 공채를 매각한 후, 주는 공채가 상환될 때 까지 매년 연불금을 지불합니다. 연간 공채 상환 비용은 이자율 및 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는 보통 30년 이상의 상환 기관 (주택소유자들이 모기지 융자금을 갚는 것과 유사)에 걸쳐 공채를 상환합니다. 이자율을 5퍼센트로 추정할 때, 차용금 1달러당 주는 30년 상환 기간 동안 거의 2달러에 가깝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2달러 금액 중 1달러가 차용금 (원금)을 상환하는데 들어가고 약 1달러가 이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각 공채에 대한 상환 시기가 전체 30년 기간에 걸쳐 퍼져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조정하면 비용은 차용액 1달러 당 약 1달러 30센트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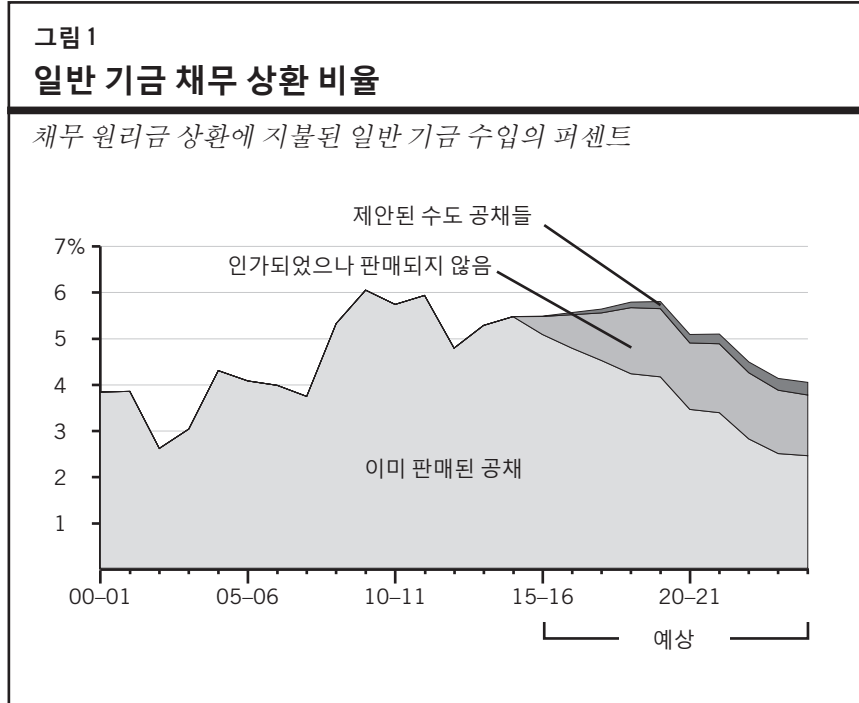
**기반 시설 공채 및 주 예산**

**일반 기금 채무 금액.** 주는 약 870억 달러의 일반 기금 지원의 미상환 기반 시설 공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공채들을 말합니다. 이는 약 760억 달러의 일반 공채와 110억 달러의 임대 수익 공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과 의회는 아직 매각되지 않은 약 290억 달러의 일반 공채 및 임대 수익 기반 시설 공채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이들 공채 대부분은 향후 몇 년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추가 프로젝트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일반 기금 채무 지불.** 2013-14년, 일반 기금의 기반 시설 공채 상환금은 총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전에 승인이 났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공채들이 공개되면, 미불 공채 채무 비용이 상승하여 2019-20년에는 70억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선거가 채무 지불에 미치는 영향.** 본 투표지 (제안 1)에 있는 수도 공채 제안은 주가 투자자들에게 일반 공채를 판매함으로써 추가 71억 달러를 차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채무 원리금 상환이라고도 알려짐)은 판매 시기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5 퍼센트가 조금 넘는 이자율을 추정하며, 공채는 십년 이상 기간으로 발행되며, 상환 기간은 3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예상 평균 연간 일반 기금 비용은 약 3억 6천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본 법안이 향후 40년의 공채 상환 기간 동안 총 144억 달러의 채무 원리금 상환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안 1은 또 주가 유권자들이 이전에 승인한 4억 2천 5백만 달러의 미판매 공채를 전용할 수 있게 허락해줍니다. 저희는, 이 법안 없이도, 이들 공채는 결국 기타 자원 관련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매각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공채 기금들의 용도를 전용하는 것은 주에는 아무런 추가 재정상의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선거가 채무 상환 비율 (DSR)에 미치는 영향.** 주의 채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주의 DSR입니다. 이 비율은 기반 시설 공채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 상환을 위해 따로 빼두어야 하는, 그래서 주의 다른 프로그램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 연간 일반 기금 수입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DSR은 현재 일반 기금 수입의 약 5%입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 투표지에 제안된 수도 공채를 승인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미 승인된 공채들에 대한 주의 채무 원리금 상환금이 2018-19년에 일반 기금 수입의 6 퍼센트까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이 투표지에 제안된 수도 공채를 승인하면, 저희는 DSR이 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대비 일퍼센트 포인트의 삼분의 일 이하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의 미래 DSR은, 향후 추가 공채들이 승인되면 그림에 나타난 것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 제안 1

2013-2014 정기국회 (188장, 2014년 법령)의 법안 1471에 의해 제안된 본 법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1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제출된다.

본 제안 법은 공공자원법과 수도법에 조항들을 추가하며, 이에 따라 추가되도록 제안된 신규 규정들은 새로운 규정임을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로 인쇄되어 있다.

### 제안 법

제1항 공공 자원 법에 추가된 제 5096.96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096.968.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본 장을 위한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일 백만 달러 (\$100,000,000)는 수도법 제 26.7 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 의 용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재분배되며, 위 법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재분배를 위한 기금은 본 장의 각 공채 배분에 비례한 방식으로 조성된다.

제 2항 공공자원법에 추가된 제 75089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5089.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본 부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일억 오백만 달러 (\$105,000,000)는 수도법 제 26.7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 의 용도를 위해 재분배되며, 위 법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재분배를 위한 기금은 본 부의 각 공채 배분에 비례한 방식으로 조성된다.

제 3항 수도법에 추가된 제 13467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467.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제 13459항의 세부 조항 (a)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일천 삼백 오십만 달러 (\$13,500,000)는 수도법 제 26.7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의 용도를 위해 재분배되며, 위 법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제 4항 수도법에 추가된 제 78691.5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8691.5.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제 78550항부터 제 78551항까지의 용도를 위해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구백 구십만 달러 (\$9,900,000)는, 제 78671항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 삼백 이십만 달러 (\$3,200,000)와, 제 78680항 세부 조항 (a)의 (3) 절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 삼백 오십만 달러(\$3,500,000), 제 78681.2항의 용도를 위해 승인된 미발행 공채 팔백 십만 달러 (\$8,100,000), 그리고 제 78530.5항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 팔십만 달러 (\$800,000)를 포함하여, 수도법 제 26.7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의 용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재분배되며, 위 법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제 5항 수도법에 추가된 제 7922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9222.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제 79157항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삼천 사백만 달러 (\$34,000,000)와, 제 79195 항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오천 이백만 달러 (\$52,000,000)는 제 26.7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의 용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재분배되며, 위 법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제 6항 수도법에 추가된 제 79591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9591.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본 부의 용도로 승인된 미발행 공채들 중 구천 오백만 달러 (\$95,000,000)는 제 26.7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의 용도를 위해 재분배되며, 위 법에 따라 승인, 발행 및 전용되어야 한다. 재분배를 위한 기금은 본 부의 각 공채 배분에 비례한 방식으로 조성된다.

제 8항 수도법에 추가된 제 26.7부 (제 79700항을 위시하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6.7부.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 (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 OF 2014)

#### 제 1장. 약제

79700. 본 부는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개선법으로 알려지고 이와 같이 인용될 수 있다.

#### 제 2장. 결론

79701. California 주민들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발견하고 공포한다:

(a) California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가정과 기업, 농장들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의무이며,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b) 모든 California 주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California는 더욱 빈번하고 극심한 가뭄을 겪어왔으며, 현재 200년 내 최악의 가뭄을 견뎌내고 있다. 이러한 가뭄이 현재 우리 수도 인프라의 결점들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d) California의 수도 인프라는 계속해서 노후 및 악화되고 있다. 50년도 더 전에 California 주민들은 주 수도 프로젝트의 건설을 승인했다. 최근 몇 십년간, 그러나, 그 인프라는 California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충분한 것으로 입증됐다.

(e) 본 법안은 California 수도 조치 계획의 세 가지 목표 - 보다 안정적인 수도 공급, 중요한 동식물들 및 서식지의 보존, 그리고 더욱 탄성있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수도 인프라-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f) 우리의 수자원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것은 California가 활기찬 커뮤니티들과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농업, 그리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g) 물 보존과 재활용을 독려하는 것은 기존 상수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상식적인 방법이다.

(b) California 내 지속 가능한 수도 관리는 과잉 양수의 감소 및 반전과 지하수 유역의 수질 개선에 달려있다. 지하수 저장소를 확대하고, 과잉 양수를 감소 및 반전시키고, 지하수 유역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투자는 엄청난 공익을 제공하며 공중을 위한 공공의 관심사이다.

(i) 호수, 강, 시내의 보호, 오염된 지하수원 정화, 전체 주에 공급되는 수자원의 보존은 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주의 천연 자원 보호에 있어 매우 중대하다.

(j)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개선법은 California의 수자원과 관련해 직면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성 있는 접근방법을 제공한다.

제 3장. 정의

79702. 문맥이 다르게 요구하지 않는 한, 본 항에 기재된 정의들은 다음과 같이 본 부의 구성을 다스린다:

(a) "취득"은 지역권, 임대, 용수, 수리권, 또는 점유량과 개발권 용도로 얻어진 용수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이익 또는 기타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b) "CALFED 만-삼각주 프로그램 (CALFED Bay-Delta Program)"은 2000년 8월 28일자의 결정 기록에 기술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 "위원회 (Commission)"는 California 수도 위원회를 의미한다.

(d) "위원회 (Committee)"는 제 79787항에 의해 만들어진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 (Water Quality, Supply,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Finance Committee)를 의미한다.

(e) "삼각주 (Delta)"는 제 85058항에 정의된 대로,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를 의미한다.

(f) "삼각주 운송 시설"은 새크라멘토 강에서 남삼각주 지역의 주수도 프로젝트 또는 연방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양수 시설들까지 곧장 물을 운송하는 시설들을 의미한다.

(g) "삼각주 카운티"는 콘트라 메사, 새크라멘토, 샌호아킨, 솔라노, 율로 카운티를 의미한다.

(h) "삼각주 계획"은 제 85059항에 정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다.

(i) "디렉터"는 수자원부 디렉터를 의미한다.

(j) "빈곤 커뮤니티"는 제 79505.5항의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의미 가지고 있으며, 이 조항은 수정될 수도 있다.

(k) "생활고 지역"은 인구수가 20,000명 이하의 지자체, 지방 카운티, 또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인구수가 20,000명 이하에 연 중간 가구 소득이 주 전체 중간 가구 소득의 85 퍼센트 이하인 더 큰 지자체의 분할 가능한 구획으로,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 (1) 재정난.
- (2) 주 전체 평균보다 2 퍼센트 높은 실업률.
- (3) 낮은 인구 밀도.

(l) "기금"은 제 79715항에 의해 만들어진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 기금을 의미한다.

(m) "점유량"은 정해진 시간동안 특정 지역에서 초당 세계급 피트 단위로 측정되는,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구체적인 하천유량을 의미한다.

(n)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은 제 6부 (제 10530항을 위시하여) 의 제 2.2 편에 기재된 의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수정될 수도 있다.

(o) "장기"는 20년 보다 적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

(p) "비영리 단체"는 미 연방법 제 26조 제 501(c)(3) 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California에서 사업할 자격을 갖춘 단체를 의미한다.

(q) "제안 1E"는 2006 재난 대비 및 홍수 방지 공채법 (Disaster Preparedness and Flood Prevention Bond Act of 2006) (공공자원법 제 1.699장 (제 5096.800항을 위시하여) 제 5부)을 의미한다.

(r) "제안 84"는 2006 안전한 식수, 수질, 수도 공급, 홍수 방지, 강 및 연안보호 공채법 (Safe Drinking Water, Water Quality and Supply, Flood Control, River and Coastal Protection Bond Act of 2006) (공공자원법 제 43부 (제 75001항을 위시하여))을 의미한다.

(s) "공공 기관"은 주 기관, 또는 국, 특수 지구, 공동 권한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기타 주의 정치적 지부를 의미한다.

(t) "빗물"은 제 10573항의 세부 조항 (c)에 기술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u) "장관"은 천연자원부 장관을 의미한다.

(v) "극빈 커뮤니티"는 보건안전법 제 116760.20 항의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w) "소규모 커뮤니티 수계"는 3,300개 이하의 급수전을 보유하고거나 연간 인구수가 10,000명 이하의 커뮤니티 수계를 의미한다.

(x) "주 위원회"는 주 수도자원 관리위원회를 의미한다.

(y) "주 일반 공채법"은 주 일반 공채법 (정부법 제 2조 제 4부의 제 4장 (제 16720항을 위시하여) 제 3편)을 의미한다.

(z) "주 소규모 수계"는 보건안전법 제 116275항의 세부 조항 (n)에 기술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a) "폭우"는 제 10573항의 세부 조항 (e)에 기술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b) "용수권"은 용수가 특정 수원으로부터 전용되어 유익하고 비낭비적인 사용을 위해 쓰여지도록 허가하는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제 4장. 일반 조항

79703. 본 부에 입각하여 보조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기금의 5 퍼센트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프로그램의 관리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79704. 별도로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본 부에 의해 기금 지원을 받는 각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최대 10 퍼센트는 그 프로그램 하에 승인된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설계와 선택,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감시에 지출될 수 있다. 본 항은 자본 지출 프로젝트와 보조 프로젝트를 위한 연간 예산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예비 계획," "실시 설계도," 그리고 "건축"을 위해 기관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금을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수질 감시 데이터는 주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지표수 감시 데이터 시스템 또는 지하수 감시 데이터 시스템과 호환적이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집계되어 주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분수량 감시 데이터는 자원보존부에 의해 관리되는

1

주 전체 분수령 프로그램과 호환적이고 일관적인 방식으로 집계되어 자원보존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79705. 정부법 제 2조제 3부의 제 3.5장 (제 11340항을 위시하여) 제 1편 은 제 8장 (제 79750항을 위시하여) 외에 본 부에 의해 승인되거나 기금 지원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들의 개발 또는 실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9706. (a) 본 부에 의거해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급하기 전, 본 부 하에 경쟁식 보조금 또는 용자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본 부에 의해 만들어진 기금의 책정액을 받는 각 주 기관은 프로젝트 요청 및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이 지침서에는 감시와 보고 요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여되는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액수에 대한 한도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해당 주 기관이 본 세부 조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요청 및 평가 지침서를 이전에 개발하고 채택했다면, 기관은 그 지침서들을 사용해도 좋다.

(b)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급하기 전, 주 기관은 지침서를 확정하기 전에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세 번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 기관은 공청회 전 최소 30일 전에 자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요청 및 평가 지침서의 초안을 게재해야 한다. 공청회 하나는 북 California 내 장소에서 개최하고, 다른 하나는 센트럴 밸리 내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 California 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채택이 되면 주 기관은 이 지침서들의 사본을 의회의 재정 위원회들과 해당 정책 위원회들에 전송해야 한다.

79707. 주민들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a) 본 부에 의거한 공공 기금의 투자는 가장 중요한 주 전체의 필요와 공공 기금의 우선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공익을 가져올 것이다.

(b) 본 부에 의해 승인된 기금의 전용과 지출에 있어, 민간, 연방, 또는 지방 기금을 사용하거나 가장 큰 공익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을 둘 것이다.

(c)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기금 지원의 근거가 된 장의 목적을 증진시킨다.

(d) 수자원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 및 지방 수도국들은 이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과학을 활용할 것이다.

(e) 수도 공급, 홍수 방지, 토지 사용, 위생을 비롯한,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관할권의 통합을 지원하는 결정 지원 툴을 포함해, 신규 또는 혁신적인 기술 또는 관행을 이용하는 프로젝트들에는 특별 배려가 이뤄질 것이다.

(f) 본 부에 의거해 기금 지원의 심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들의 평가에는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들의 전문가 심사가 포함될 것이다.

(g) 실행 가능한 범위까지, 본 부에 의해 조성된 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가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의 기금을 받았음을 공중에 알리는 사인물이 포함될 것이다.

(b) 본 부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정부법 제 13100항과 본 법의 제 7부 (제 13000항을 위시하여)와 일관적일 것입니다.

(i) 본 부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정부법 제 65041.1항의 규정들과 일치하는 주 계획 우선 사항들과, 정부법 제 65080항의 세부 조항 (b)의 제 (2)절, 제 (B)호의 규정들과 일치하는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들을, 실행 가능한 선까지 촉진할 것이다.

(j) California의 기본적인 농경 및 산림 조경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보존될 것이다. 실행이 가능한 선까지, 본 부에 포함된 분수령 목표들은 공공자원법 제 10.2부 (제 10200항을 위시하여)와 제 10.4부(제 10330항을 위시하여)에 의거한 지역권의 사용과 자발적인 서식지 지출 어음 방법들을 포함해,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보존 지역권과 자발적인 토지 소유자 참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79708. (a) 재무부는 본 부에 의거해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제공할 것이다. 장관은 본 부에 의거해 모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출 내역 리스트를, 최소 해마다, 서면으로 공표해야 하며, 천연자원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 문서 형식의 리스트를 게재해야 한다.

(b) 법령으로 요구되는 바에 따라, 본 부에 의해 승인된 기금을 받는 어떠한 기관의 감사가 주법에 따라 실시되고 부적절한 오용이 밝혀지는 경우, California 주 회계감사관 또는 회계감사원장은 해당 기관의 어떠한, 또는 전체 활동에 대한 전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c) 본 부에 의해 승인된 기금과 함께 어떠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발행하는 주 기관은 그 보조금 및 용자금 기금의 지출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요구하여야 한다.

(d) 본 부에 따라 프로젝트들을 요청하기 전, 주 기관들은 장관에게 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그 지침서들이 해당 법령 및 본 부에 열거된 모든 목적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장관은 주 기관들이 제출한 지침서들을 전자 문서 형식으로 게재해야 하며 그에 따른 확인사실을 천연자원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79709. (a) 용수의 영구적인 공급권 취득을 위해 본 부에 따라 지출된 기금들은 주 위원회가 해당 용수가 제 1707항 세부 조항 (c)에 규정된 규제 요건들에 의해 요구되는 용수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명시하는 제 1707항에 부합해야 한다. 본 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의 지출은, 어떤 환경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영구 공급의 승인을 받는데 요구되는 기간 동안, 제 2부의제 2편, 제 1707항과 제 6.6장 (제 1435항을 위시하여)이나 제 10.5장 (제 1725항을 위시하여) 중 하나에 따라 승인된, 단기 또는 임시 긴급 변경으로 공급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b) 만약 주 위원회가 공청회 안내 및 기회를 제공한 뒤 그러한 청원을 승인하면, 장기 용수 이송의 취득에 대해 본 부에 따라 지출되는 기금들은 제 1735, 1736, 그리고 1737항에 따라 이송된다. 본 부에 따라 지출되는 기금들은 영구 이송에 있어 우선 사항을 정해야 한다. 장기 이송은,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개선법 (공법 102-575 제 34조)의 제 3406항 세부 조항 (d)의 이득을 위한 용수 이송을 제외하고는, 20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c) 용수의 취득을 위해 본 부에 따라 지출되는 기금들은 본 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어장들 또는 생태계 혜택, 또는 해당 환경 완화 법안들에 의해 요구되는 바나 본 부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 조성된 당시 시행되는 의무 규정 보다 더 큰 개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개선법 (공법 102-575 제 34조) 제 3406항의 세부 조항 (d)의 이득을 위한 용수 이송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법안이나 법적 의무에 지급될 수 없다.

79710. (a) 본 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은 삼각주 운송 시설들의 설계, 건축, 운영, 완화, 또는 유지 보수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출되어선 안된다. 이들 비용은 그 시설들의 설계, 건축, 운영, 완화,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해 혜택을 입는 수도국들이 책임져야 한다.

(b) 실행 가능한 선까지, 제79731항의 세부 조항 (k)의 실행에 있어, 새크라멘토-센호아킨 삼각주 보존은 공지에 대한 프로젝트들이나 사유지에 대한 자발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야생 동물 보호 목표 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 79731항의 세부 조항 (k)에 의거해 새크라멘토-센호아킨 삼각주 보존에게 제공되는 기금들은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의 하에, 측정 가능한 서식지 개선 활동이나, 멸종 위기에 있거나 위협받는 생물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로 사용될 수도 있다. 새크라멘토-센호아킨 삼각주 보존은 삼각주 내, 측정 가능하고 장기 지속적인 서식지 또는 생물 개선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의 자발적인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극대화 해주는 경쟁력 있는 서식지 강화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실행할 수 있다. 이들 기금은 그 어떤 단체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이들의 완화 의무들을 줄여주는 데 사용되어선 안된다.

(c) 제 79731항의 세부 조항 (k)의 실행에 있어, 새크라멘토-센호아킨 삼각주 보존은 제안된 보조금이 지출될,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이익의 취득이 제안된 시 또는 카운티, 그리고 삼각주 보호 위원회와 협조 및 협의 하여야 한다. 새크라멘토-센호아킨 삼각주 보존에 의한 취득은 제 79731 항의 세부 조항 (k)에 따라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만 가능하다.

79711. (a) 본 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에 규정된 데로, 그 어떠한 기원지, 분수령 발생지, 발생 카운티, 또는 1914년 12월 19일 이전에 전용된 용수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기타 용수권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거나 그 외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부는 제 10505, 10505.5, 11128, 11460, 11461, 11462, 그리고 11463 항 제 2부 의 제 2편, 제 1장의 제 1.7조 (제 1215항을 위시하여), 그리고 제 12200항 부터 12220항까지 모두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본 부의 목적 상, 새크라멘토 강 수문 지역 또는 삼각주 밖의 사용을 위해 새크라멘토 강 수문 지역으로부터 전용 및 운송되어온 물을 사용하는 지역은 그 곳에 바로 인접해 있거나 그 목적으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건설되었을 수 있는 시설들을 통해 물을 전용 및 운송하는

덕택에 그 곳으로부터 물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c) 본 부의 그 무엇도 제 35부 제 4편의 제 2장 (제 85320 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되는 신규 운송 시설과 관련한 청원들을 포함해, 제 2부 의 제 2편 제 10장 (제 1700항을 위시하여)의 적용성을 대체, 제한, 또는 그 외 변경하지 않는다.

(d) 다르게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본 부의 그 무엇도, 용수권 우선 사항들과, 제 106 및 106.5항에 의한 지방 이득에 대한 보호, 용수권에 대한 변경을 포함,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용수의 전용 및 사용에 대한 주 위원회의 규제와 관련해, 기존의 절차법과 실체법 모두를 포함한 법적 보호를 대체하거나, 축소하거나, 그 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부의 그 무엇도 용수의 전용 및 사용, 또는 California 용수권에 대한 법원의 기존 동시 관할권을 규제하는 주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확대하거나 그 외 변경하지 않는다.

(e) 본 부에 있는 그 무엇도 California 야생·경관장법 (공공자원법 제 5부 제 1.4장 (제 5093.50항을 위시하여)) 또는 연방 야생·경관장법 (미 연방법 제 16조 1271항 이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안되며, 본 부에 따라 승인된 기금들은 야생·경관장 또는 그 어떠한 강이 California 야생·경관장법 또는 연방 야생·경관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가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f) 본 부의 그 무엇도 2009 새크라멘토-센호아킨 삼각주 개혁법 (제 35부 (제 85000항을 위시하여)) 또는 공공자원법 제 22.3부 (제 32300항을 위시하여)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은 기타 그 어떤 해당 법을 대체, 제한하거나 그 외 변경하지 않는다.

(g) 본 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은 토지수용권을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어선 안된다.

(b) 다른 어떤 법에도 불구하고, 본 부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기관은 누구든, 2000 자연유산보호 세금공제법 (공공자원법 제 28부 (제 37000항을 위시하여))를 이용할 수 있다.

79712. (a) 본 부 하에 해당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은 공공 기관들, 비영리 단체들, 공기업들, 연방에서 인정하는 인디언 부족들, 미국 원주민 유산 위원회의 California 부족 상담 리스트 (California Tribal Consultation List)에 기재된 주 인디언 부족들, 그리고 상호 수도 기업들이다.

(b) (1) 본 부의 기금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공기업 위원회 (Public Utilities Commission) 또는 상호 수도 회사에 의해 규제되는 공기업에 의해 제안된 프로젝트에 분명하고 명확한 공익 목적이 있어야 하고, 수계의 투자자들이 아닌 고객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2) 본 부의 기금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도시 수도 공급자는 도시수도관리 계획법 (제 6부 제 2.6편 (제 1061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도시 수도 관리 계획을 채택 및 제출해야 한다.

(3) 본 부의 기금 수혜 자격을 갖추려면, 농업 용수 공급자는 농업용수관리 계획법(제6부 제2.8편(제1080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농업 용수 관리 계획을 채택 및 제출해야 한다.

(4) 제 10608.56항에 따라, 농업 용수 공급자 또는 도시 수도 공급자는 제 6부 제 2.55편(제 10608항을 위시하여)의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본 부의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79713. 의회는 제 79760항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본 부에 의해 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제정할 수 있다.

79714. (a) 다르게 명시되지 않은 이상, 본 공채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목적들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진 주 기관은 그 누구나 본 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을 전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b) 본 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의회가 전용할 수 없다.

(c) 본 부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은 공공자원법 제 14507.5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California 주 자원보존단(California Conservation Corps) 또는 인가된 커뮤니티 자원보존단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79715. 본 부에 따라 발행되고 매각된 공채들의 수익금은, 주 재무부에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 기금에 입금되어야 한다.

79716. 본 부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의 책정액을 받는 각 주 기관은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성공 측정 기준을 확립하고, 주의 공채 회계책임성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금의 모든 사용 내역과 프로젝트들의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제 5장. 깨끗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식수

79720. 전 California 주민들을 위해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 제공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비용, 보조금 및 용자금을 위해 의회가 기금을 전용하면 총 오억 이천만 달러(\$520,000,000)가 마련될 것이다.

79721. 본 장에 따른 기금 수혜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들은 유익한 사용을 위한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수원 또는 오염에 관계 없이 식수 공급에 있어서의 오염물을 줄인다.

(b) 식수 공급에 있어서의 오염 위험을 평가하고 우선시한다.

(c) 공공 보건 비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염된 식수 공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빈곤, 시골, 또는 소규모 커뮤니티들의 중대하고 즉각적인 필요를 해소한다.

(d) 기타 민간, 연방, 주, 그리고 지방의 식수질과 폐수 처리 기금들을 활용한다.

(e) 주 용수의 배출물 내 오염물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한다.

(f) 식수 공급의 추가 오염을 방지한다.

(g) 빈곤 커뮤니티들에게 이들 커뮤니티가 장기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주는 공공 식수 인프라를 제공한다.

(b) California 내 커뮤니티들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으며 부담없는 가격의 식수 이용성을 보장한다.

(i) 1차 및 2차 안전 식수 기준에 부합하거나 1차 또는 2차 식수 기준의 개발을 위해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식별된 오염물들을 제거한다.

79722. 본 장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오염물들로는 질산염, 과염소산염,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비소, 셀레늄, 육가 크로뮴, 수은, PCE (퍼클로로에틸렌),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DCE (디클로로에텐), DCA (디클로로에탄), 1,2,3-TCP (트리클로로프로판),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4-디옥사시클로헥산,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브롬화물, 철분, 망간, 그리고 우라늄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79723. 제 7972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이억 육천만 달러(\$260,000,000)는 폐수 처리 프로젝트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제 13477.6항에 따라 조성된 주 수질오염 방지 회전 기금 소규모 커뮤니티 보조 기금에 예금될 것이다. 빈곤 커뮤니티들과 극빈 커뮤니티들을 위한 프로젝트들과 공공 보건 위험 요인들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프로젝트에는 폐수 시스템을 통합하거나 부담없는 비용의 처리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방법들의 발견, 계획, 설계 및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79724. (a) (1) 제 7972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이억 육천만 달러(\$260,000,000)는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부담없는 가격의 식수를 보장하기 위해, 또는 그 둘 모두를 위한 공공 수계 인프라 개선과 관련 조치들을 위한 보조금 및 용자금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오염 처리, 또는 대체 식수원 이용성을 제공하거나, 식수원이 화학물질 및 질산염 오염물질, 그리고 주 위원회가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한 기타 물질들로 인해 손상된 빈곤 커뮤니티들 내 소규모 커뮤니티 수계, 또는 주 소규모 수계에 수원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자격이 있는 수령자들은 빈곤 커뮤니티들과 공공 수계 또는 공공 기관들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위원회는 타당성 조사 자금을 대고, 건축 보조금을 위한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용도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자격에 해당되는 비용에는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의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안전하고 부담없는 가격대의 식수가 부족하고, 소규모 커뮤니티 수계나 주 소규모 수계, 또는 민간 우물의 서비스를 받는 빈곤 커뮤니티가 최소 하나는 포함된 다수의 커뮤니티들에 공유되는 해결책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 우선 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건축 보조금은, 주 위원회가 지역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최소 하나는 소규모 빈곤 커뮤니티에 속하는 여러 커뮤니티들에 의해 공유되는 프로젝트들의 한도액을 이천만 달러(\$20,000,000)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백만 달러(\$5,000,000)로 제한될 것이다. 실비로 미리 지급되는 금액은 보조금의 2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2) 본 세부 조항의 목적과 관련해,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간주되기 위해 건축 프로젝트의 초기 기동 시험까지를 포함하는 건축

자금 지원 계약상의 초기, 수령 자격이 있는, 변제 가능한 비용들을 의미한다. 초기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이 년 이하의 기간동안 본 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b) 운영 단체는 유자격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술 지원을 위해 세부 조항 (a)에 할당되어 있는 기금 중 최대 이천 오백만 달러 (\$25,000,000)까지 지출할 수 있다.

(c) 주 위원회는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에서 최대 이백 오십만 달러 (\$2,500,000)를 주 재무부에 의해 이와 같이 조성된 식수 자본 준비금으로 예금할 것이다. 식수 자본 준비금에 있는 기금은 의회의 전용에 따라 제공될 것이며,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상응 보조금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주 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것이다. 주 위원회는 본 세부 조항의 실행을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79725. (a) 본 장에 준거해 기금을 수여하기 위해, 지방의 비용 분담금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50 퍼센트가 넘도록 요구될 것이다. 비용 분담 요구 조건은 빈곤 커뮤니티나 생활고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들에게는 면제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b) 본 장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의 10 퍼센트는 극빈 커뮤니티들에 봉사하는 프로젝트들에 배정되어야 한다.

(c)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의 최대 15 퍼센트는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술 지원에 배정될 수 있다. 본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소규모 및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d) 기술 지원을 포함, 빈곤 커뮤니티들을 돕기 위한 계획 활동을 위한 기금은, 기금을 관리하는 주 기관에 의해 추가 계획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정된 기금의 15 퍼센트를 초과할 수도 있다.

제 6장. 강, 호수, 시내, 연안 해역 및 분수령의 보호

79730. 총 십사억 구천 오백만 달러 (\$1,495,000,000)가 의회의 기금 전용에 따라, 본 장에 의거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는 생태계와 분수령의 보호와 주 전체 우선 사항들에 맞춘 복원 프로젝트들에 경쟁식 보조금을 주기 위해 제공될 것이다.

79731. 제 7973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총 삼억 이천 칠백 오십만 달러 (\$327,500,000)가 다양한 혜택의 수질, 수도 공급, 분수령 보호와 주의 분수령 보호 프로젝트들에 다음 편성표에 따라 배정될 것이다.

- (a) 볼드윈 힐즈 자원 보존, 천만 달러 (\$10,000,000).
- (b) California 타호 호수 자원 보존, 천 오백만 달러 (\$15,000,000).
- (c) 코첼라 밸리 산 보존, 천만 달러 (\$10,000,000).
- (d) 해양 보호 위원회, 삼천만 달러 (\$30,000,000).
- (e) 샌디에고 강 보존, 천 칠백만 달러 (\$17,000,000).

(f) 샌가브리엘 및 로스앤젤레스강 하류 및 산 보존, 삼천만 달러 (\$30,000,000).

(g) 샌호아킨 강 보존, 천만 달러 (\$10,000,000).

(h) 산타모니카 산 보존, 삼천만 달러 (\$30,000,000).

(i) 시에라 네바다 보존, 이천 오백만 달러 (\$25,000,000).

(j) 주 연안 보존, 일억 오십만 달러 (\$100,500,000).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들을 받을 수 있는 분수령들로는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지역에 있는 것들과, 산타아나 강 분수령, 티유아나 강 분수령, 오테이 강 분수령, 카탈리나 섬, 그리고 중부해안 지역이 포함되나,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k)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 보존, 오천만 달러 (\$50,000,000).

79732. (a) California의 강들과 호수, 시내, 분수령들을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해 본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건강한 분수령들과 어자원, 그리고 점유량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가시킨다.

(2) California의 커뮤니티들과 생태계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분수령 적응 프로젝트들을 실행한다.

(3) 제 7048항에 따라 창립된 도시 시내 복원 프로그램과 도시 강 푸른길의 2004 California 강변 도로법 (공공자원법 제 5부 제 3.8장 (제 5750항을 위시하여))에 따른 프로젝트들을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주 전체의 강변 도로들을 복원한다.

(4) 어류와 야생동물 회랑 지대와 점유량을 위한 용수권 취득을 포함해, 수생, 습지대, 철새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한다.

(5) 수자원과 관련한 다자간 합의 계약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 California 주의 의무들을 완수한다.

(6) 어류가 지나가는 길의 장벽들을 제거한다.

(7) California 가 원산지인 어류들과 California 센트럴 밸리 지역의 습지대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연방 기관들과 협력한다.

(8) 산불 위험을 줄이고, 저수 시설들에 합류하는 분수령들을 보호하고, 분수령의 건강을 촉진하는 연료 처리 프로젝트들을 실행한다.

(9) 분수령 저장 용량, 산림 건강, 생명과 재산의 보호, 폭우 자원 관리, 그리고 온실 가스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원 및 도시 분수령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10) 만과 바다 어귀, 해변 생태계를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은 해안 분수령들을 보호하고 복원한다.

(11) 강과 호수, 시내 또는 연안 해역의 공해 또는 오염을 줄이고, 폐광들로부터 나오는 수은 오염을 방지 및 개선하고, 수도 공급과 수질, 또는 홍수 관리에 기여하는 자연 분류 기능들을 보호 또는 복원한다.

1

(12) 분수령 건강성과 점유량, 어로, 해안 또는 내륙 습지대 복원, 또는 자연 커뮤니티 보존 계획과 서식지 보존 계획 실행과 같은 기타 수단들을 개선함으로써, 멸종 위기의 위협받는, 또는 이동하는 종들의 복구를 지원한다.

(13) 용수 관련 농업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b) 본 장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은 해당 환경 완화 법안들 또는 의무 규정에 요구되는 바 보다 큰 혜택 또는 개선을 어장 및 생태계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79733. 제 79730항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 중, 총 이억 달러 (\$200,000,000)는 점유량을 강화해주는 프로젝트들을 위해 야생자원 보존위원회에 의해 관리된다.

79734. 본 장에 따른 복원 및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들을 위해, California 주 자원보존단 또는 California 주 자원보존단에 의해 인가된 지방 자원보존단들의 서비스가 실행 가능할 때마다 사용될 것이다.

79735. (a) 제 7973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일억 달러 (\$100,000,000)가 의회의 전용에 따라, 공공자원법 제 22.8부 (제 32600항을 위시하여), 제 23부 (제 33000항을 위시하여)와 제 79508항에 따라, 제 7048항 세부 조항 (e)와 그에 속한 조항들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도시 개울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프로젝트들에 제공될 것이다.

(b) (1) 제 7973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이천만 달러 (\$20,000,000)가 다양한 혜택을 주는 분수령과 도시 분수령 내 도시 강 강화 프로젝트들에 기금을 지원하는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장관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들은 지역 및 지방 수도 자급률을 높이고 다음 중 최소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지하수 충전 및 물 재사용을 촉진한다.
- (B)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C) 유출량 처리에 흙, 식물, 자연 과정을 사용한다.
- (D) 천연 서식지를 생성 또는 복원한다.
- (E)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및 지방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증대한다.

(2) 본 세부 조항 하의 프로그램은 주 보존단들, 야생자원 보존위원회, 주 위원회, 또는 장관이 지정한 바에 따라 도시 분수령들이 관할권에 포함된 기타 지자체들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 하에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보존단들과 야생자원 보존위원회, 주 위원회, 또는 기타 장관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지자체들에 의해 공동 개발된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c)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의 최소 25 퍼센트는 빈곤 커뮤니티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들에 배정될 것이다.

(d)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의 최대 10 퍼센트는 프로젝트 계획에 배정될 수 있다.

79736. 제 7973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사억 칠천 오백만 달러 (\$475,000,000)가 천연자원부에 제공될 것이며, 이 기금은 다음의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 있어 California 주의 의무를 완수하는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일 것이다:

(a)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개선법 (공법 102-575 제 34조) 제 3406항의 세부 조항 (d).

(b) 정부법 제 7.42조 (제 66905항을 위시하여)에 따른 정부법 제 66801항에 정해진 주정부간 협약.

(c) 2003년 법령의 제 611, 612, 613, 그리고 614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주 내의 다자간 용수 수량화 합의 계약 규정.

(d) 어로 및 사냥법 제 2080.2항에 참조된 합의 계약.

(e)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전에 시행된 용수 관련 주 내, 또는 다자간의 합의 계약.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들에게 우선 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 (1) 주 전체에 있어 중요한 프로젝트.
- (2) 천연 수생이나 하천의 기능, 또는 새들과 수생 생물들을 위한 습지 서식지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
- (3)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위협받고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거나, 이들의 복원을 촉진하는 프로젝트.
- (4) 지역 내 또는 지역간 단위로 수도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프로젝트.
- (5) 지역 또는 주 전체에 중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79737. (a) 제 7973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이억 팔천 오백만 달러 (\$285,000,000)가 본 장에 의거해, 주 전체 분수령 복원 프로젝트들을 위해 어류 및 야생동물부에 제공될 것이다.

(b) 본 항의 목적을 위해, 분수령 복원 활동에는 해안 습지대 서식지에 기금을 지원하고, 산림 건강을 증진하고, 산 목초지들을 복원하고, 시내 도하들과 지하 배수로, 교량들을 현대화하고, 상습 범람원들을 재연결하고, 어망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 어로를 제공하고, 하도를 복원하고, 하천, 수생 및 육생 서식지를 복원 또는 강화하고,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하고, 하천 방식대를 위해 보존 지역권을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 취득하고, 지방 분수령 관리를 개선하고, 침전물과 쓰레기를 제거하는 호라동들이 포함된다.

(c) 어장 복원 보조금 프로그램 하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해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들은 우선 순위를 연안 해역에 둘 것이다.

(d) 본 항에 따른 프로젝트들을 위해 기금을 배정하는데 있어, 어류 및 야생동물부만이 삼각주 지역 밖의 주 전체에 중요성을 띠는 수질, 강, 분수령 보호 및 복원 프로젝트들에게 이 기금을 수여할 수 있다.

(e)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은 삼각주 운송 시설들의 설계, 건축,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f)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은 해당 환경 완화 법안 또는 의무 규정이 요구하는 것보다 큰 혜택 또는 개선을 어장 또는 생태계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단 여기서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개선법 (공법 102-575 제 34조) 제 3406항 세부 조항 (d)의 이득을 위한 용수 이송은 예외로 한다.

79738. (a) 제 7973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팔천 칠백 오십만 달러 (\$87,500,000)가 수질, 생태계 복원 및 삼각주에 혜택을 주는 어류 보호 시설들을 위해 어류 및

야생동물부에 제공될 것이며, 이들 프로젝트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1) 다양한 공익을 제공하고 식수 및 농업 용수의 수질 또는 공급을 개선하는 삼각주 카운티들 내의 프로젝트들을 포함해, 수질 개선을 위한, 또는 삼각주 내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들.

(2) 외래유입종을 퇴치하는 프로젝트와 서식지 복원 및 제방 개선을 위해 준설토의 유익한 재사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해, 삼각주 및 삼각주 카운티들 내에서 특수한 상태에 있거나, 위험, 멸종 위기에 빠져있거나, 위협받고 있는 생물들이 처한 환경을 개선해주는 서식지 복원, 보존 및 강화 프로젝트들.

(3) 제 85280항 또는 본 항 하의 프로젝트들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삼각주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과학적 조사 결과와 평가.

(b) 본 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부는 보조금 지출이 제안된, 또는 부동산 취득이 제안된 삼각주 시 또는 카운티와 협조 및 협의하여야 한다.

(c) 본 항에 따른 취득은 자발적인 판매자로부터만 가능하다.

(d) 본 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 주 기관들은 실행 가능한 선까지, 공지에 대한 프로젝트들 또는 사유지에 대한 자발적 프로젝트들을 통해 야생동물 보존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e)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들은 토지수용권을 통한 토지 취득에 사용될 수 없다.

(f)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들은 삼각주 운송 시설들의 설계, 건축, 운영, 완화 또는 유지보수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제 7장. 지역 용수 안전, 기후 및 가뭄 대비

79740. 총 팔억 일천만 달러 (\$810,000,000)가 본 기금에 대한 의회의 전용에 따라, 제 6부 제 2.2편 (제 10530항을 위시하여)과 일치하는 채택된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에 포함되고 실행되며,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후 변화와 지역 용수 안전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들의 비용과 경쟁식 보조금, 융자금으로 제공될 것이다.

79741. 지역의 수도 자립성 확보를 개선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수도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본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수도 인프라 시스템이 해수면 상승을 포함,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

(b) 지역의 수자원 관리와 수도 인프라에 대한 지역의 우선 사항들을 설정하는 데 협력하도록 각 분수령마다 수도국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c) 제 85021항에 일치하게 지역 수도 자립성을 증진한다.

79742. (a) 분수령 내의 제안된 프로젝트들을 선택하는데 있어, 채택된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의 범위는 관리를 담당하는 주 기관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해당 분수령의 보다 큰 구획을 아우르는 계획을 가진 프로젝트들에 우선 순위를 둔다. 만약 계획이 대체적으로 전체 분수령을 아우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계획이 본 부와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법 (제 6부 제 2.2

편(제10530 항을 위시하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획의 프로젝트 우선 사항들에는 차이가 주어질 것이다.

(b) 제 6부 (제 10000항을 위시하여) 하에 확립된 지하수 계획 요구 조건들에 따라 지하수 계획을 작성, 채택 및 제출하지 않는 지방 기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들에 맞춰 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기 전에는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하수 관리 계획 요구 조건들은 제 18부 (제 6000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형성된 수도 보급 지구나, 판결된 지하수 유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는 지방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 본 장 하에 수여되는 기금의 목적을 위해, 비 주 자금 출처가 해당 프로젝트 전체 비용의 50 퍼센트 이상의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비용 분담 요구 조건은 빈곤 커뮤니티나 생활고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들에게는 면제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d)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10 퍼센트 이상은 빈곤 커뮤니티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들에 배정되어야 한다.

(e) 본 장에 따라 수여되는 기금의 목적을 위해, 신청자 프로젝트가 실행하는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내 수도 공급 및 수도 인프라 관련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f) 다양한 혜택을 달성하는 프로젝트들은 특별 고려를 받을 것이다.

79743. 해당 지역 수도 관리 단체가 정하는 지역적 우선 사항들에 따라 달라지는 유자격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들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a) 비식수용 재사용과 직접 및 간접 식수 재사용을 위한 용수 재사용 및 재활용.

(b) 수도 사용 효율성 및 수도 보존.

(c) 지하수 대수층 정화 또는 충전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지방 및 지역 지표수 및 지하수 저장.

(d) 개별 수계의 통합을 개선하는 지역 수도 운송 시설들.

(e) 산불의 위험을 낮추거나 수도 공급 안정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한 분수령 보호, 복원 및 관리 프로젝트들.

(f) 다음을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폭우 자원 관리:

(1) 빗물 또는 폭우를 감소, 관리, 처리 또는 포획하는 프로젝트들.

(2) 수질, 수도 공급, 홍수 방지 또는 공터와 같이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들.

(3) 다양한 혜택을 가진 폭우 프로젝트들의 혜택 및 비용을 평가하는 의사 결정 지원 틀들.

(4) 제 6부의 제 2.3편 (제 1056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개발된 폭우 자원 계획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들.

(g) 지표수 및 지하수 저장 시설들의 연계 사용.

1

(b) 담수화 프로젝트들.  
 (i) 기후 변화와 지역 수요에 있어서의 기타 변화, 공급량 예산을 설명해 지역 수도 관리 전략 모델을 만들어 주는 의사 결정 지원 툴들.

(j) 식수 처리와 배급, 지하수 및 대수층 복원, 용수 사용에 맞게 수질 맞춤, 폐수 처리, 수질 오염 방지, 그리고 도시 및 농업 유출량 관리를 포함한 수질 개선.

79744. (a) 제 7974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오억 일천만 달러 (\$510,000,000)가 본 항에 따라 California 수도 계획에 확인된 바와 같이 수문 지역들에 배정될 것이다. 남해안 수문 지역들을 위해, 부는 샌디에고 카운티와 남부 오렌지 카운티 분수령들과 (샌디에고 소구역으로 지정됨) 산타아나 강 분수령 (산타아나 소구역으로 지정됨),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와 벤츄라 카운티 분수령들 (로스앤젤레스 소구역으로 지정됨)을 나타내는 세 개의 기금 수여 지역들을 설정할 것이며,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이들 지역에 기금을 배정할 것이다. 북부 및 남부 라혼탄 수문 지역들은 기금 배정의 목적상, 하나의 지역으로 취급될 것이다. 본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새크라멘토 강 수문 지역에는 삼각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본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마운틴 카운티 오버레이 (Mountain Counties Overlay)는 새크라멘토 강 수문 지역 또는 샌호아킨 강 수문 지역의 기금을 받을 수 없다. 기금이 배정되는 각 지역에서 여러 개의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이 인정될 수도 있다.

(b) 본 장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은 다음과 같이 배정될 것이다:

(1) 북해안 수문 지역에 이천 육백 오십만 달러 (\$26,500,000).

(2) 샌프란시스코만 수문 지역에 육천 오백만 달러 (\$65,000,000).

(3) 중부해안 수문 지역에 사천 삼백만 달러 (\$43,000,000).

(4) 로스앤젤레스 소구역에 구천 팔백만 달러 (\$98,000,000).

(5) 산타아나 소구역에 육천 삼백만 달러 (\$63,000,000).

(6) 샌디에고 소구역에 오천 이백 오십만 달러 (\$52,500,000).

(7) 새크라멘토 강 수문 지역에 삼천 칠백만 달러 (\$37,000,000).

(8) 샌호아킨 강 수문 지역에 삼천 일백만 달러 (\$31,000,000).

(9) 톨레어/컨 수문 지역에 삼천 사백만 달러 (\$34,000,000).

(10) 북/남부 라혼탄 수문 지역에 이천 사백오십만 달러 (\$24,500,000).

(11) 콜로라도 유역 수문 지역에 이천 이백오십만 달러 (\$22,500,000).

(12) 마운틴 카운티 오버레이에 일천 삼백만 달러 (\$13,000,000).

79745. 수자원부는 지역 내 빈곤 커뮤니티들과 생활고 지역들, 또는 소외된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79744항에 명시된 지역 할당 기금의 10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비경쟁식 보조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79746. (a) 제 7974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총 일억 달러 (\$100,000,000)가 다음의 수도 보존 및 수도 사용 효율성 계획,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을 위한 직접 지출, 보조금, 융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제 10608.20항에 따라 개발된 도시 수도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지역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도시 수도 보존 계획,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 기금 지원의 우선 순위는 다음을 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부여될 것이다:

(A) 지방에 비용 효율적이지 않는 법안들과 보존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도록 수도 공급자들 및 지역에 지원 제공.

(B) 상업, 공업, 기관 수도 사용자들을 위한 용수 사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수도 공급자들 및 지역의 노력 지원.

(C) 주경관모델조례의 규정 이행에 따른 보존 혜택들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법안들을 통해 수도 공급자들 및 지역 지원.

(2) 제 6부 제 2.8편 (제 1080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개발된 농업 용수 관리 또는 농업 용수 사용 효율성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

(b) 제 1011항은 농업 용수 공급자 또는 도시 용수 공급자들이 본 장 하에 제공되는 기금을 통해 실행하는 모든 보존 법안들에 적용된다. 본 세부 조항은 수도 공급자에 의해 실행되는 기타 다른 법안 또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제 1011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 79748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기금 지원되는 프로젝트들은 통합 지역 수도 관리 계획에 채택되어 있거나 그 프로그램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

79747. (a) 제 7974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이억 달러 (\$200,000,000)가 다양한 혜택을 가진 폭우 관리 프로젝트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제공될 것이다.

(b) 유자격 프로젝트는 친환경 인프라, 빗물 및 폭우 포획 프로젝트들, 폭우 처리 시설들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c) 폭우 프로젝트 계획의 개발은 전체 분수령을 아우르고 영향을 받는 수로에 인접한 커뮤니티들, 특히 빈곤 커뮤니티들의 견해를 반영해야 한다.

79748. 지하수 수질 또는 대수층 내 용수량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기금을 수여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공공 기관이 해당 대수층의 수자원을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제 6부 (제 10000항을 위시하여) 하에 제정된 지하수 관리 계획 규정들에 따라 채택되고 제출된 지하수 관리 계획은 본 항의 규정들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 8장. 주 전체 수계 운영 개선 및 가뭄 대비

79750. (a) 제 162항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디렉터의 의견으로부터 독립적인 본 장에 요구된 바에 따라 결정과 결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내리는 모든 최종 조치들은 베이글리-킨 공개회의법 (Bagley-Keene Open Meeting Act) (정부법 제 2조 제 3부의 제 1편 제 1장 제 9조 (제 1112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공지되고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b) 정부법 제 13340항에 불구하고, 총 이십 칠억 달러 (\$2,700,000,000)가 이로써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기금으로부터 전용되어, 주의 수계 운영을 개선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생태계와 수질 상태에 최종적인 개선을 제공하는 저수 프로젝트들과 관련한 공익을 위해, 본 장에 의거, 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본 장에 따라 승인되거나 위원회에 제공되기 위해 마련된 기금들은 본 장에 규정된 목적들만을 위해서 지출되어야 하며, 의회나 주지사에게 의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전용되거나 이전될 수 없다.

(c) 프로젝트들은 본 장에 제정된 기준들에 따라, 제공하는 공익의 중요도를 측정해 공공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기준으로 잠재 프로젝트들의 순위를 매기는 경쟁력있는 공공 절차를 통해 위원회에 의해 선정될 것이다.

(d) 본 장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들로 건축되는 프로젝트는 모두 제 11590에 따라야 한다.

79751. 본 장에 의해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을 띄는 프로젝트들은 다음으로만 구성된다:

(a) 공법 제 5부 제 1.4장 (제5093.50항을 위시하여)에 의해 금지된 프로젝트들을 제외한, 2000년 8월 28일자 CALFED-삼각주 프로그램 결정 기록에 명시된 지표면 저류 프로젝트들.

(b) 저수 혜택을 제공하는 지하수 저장 프로젝트들과 지하수 오염 방지 및 복원 프로젝트들.

(c) 연계 활용 및 저수지 재운영 프로젝트들.

(d) 주 내 수계 운영을 개선하고 공익을 제공하는 지방 및 지역 지표면 저류 프로젝트들.

79752. 프로젝트가 삼각주 또는 삼각주 중속 지역 생태계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른 기금을 받을 수 없다.

79753. (a) 본 장에 따라 배정된 기금들은 온전히 저수 프로젝트들과 관련된 다음의 공익을 위해서만 지출될 수 있다:

(1) 물 전환 시기의 변경, 흐름 상태 개선, 온도, 또는 수생 생태계와 삼각주 내 생태계와 어류 및 야생동물을 포함한 토종 어류 및 야생동물의 복원에 기여하는 기타 혜택을 포함한 생태계 개선 활동들.

(2) 상당한 공공 신탁 자원들을 제공하거나 지하수 자원들을 정화하고 복원하는 삼각주 또는 기타 강 시스템 내 수질 개선.

(3) 기존 시설 교체를 통한 기존 저수지 내 홍수 저수 공간 증대 또는 California 수도 및 홍수 관리 시스템 내 변화하는 수문학과 줄어드는 눈 수원의 영향에 대비하는 저수량 증대를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홍수 방지 혜택들.

(4) 비상 상수도, 희석화를 위한 흐름 확보, 그리고 자연 재해 또는 테러 행위 이후 염도 제거 등을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비상 대책.

(5) 일반적으로 야외와 연관된 오락용 활동을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오락 목적 활동들.

(b) 기금들은 본 항에 기술된 공익 제공과 관련한 것들은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환경 완화 법안들이나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에 지출되어선 안된다.

79754. 어류 및 야생동물부, 주 위원회, 수자원부와 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는 2016년 12월 15일까지, 제 79753항에 기술된 바에 따라 공익의 정량화와 관리 방법 규정 개발 및 채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어류 및 야생동물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우선 사항들과 생태계 혜택들의 관련 환경 가치, 그리고 주 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수질 혜택들의 관련 환경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79755. (a) 세부 조항 (c)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본 장에 의해 배정된 그 어떠한 기금도 2016년 12월 15일 전, 그리고 위원회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배정될 수 없다.

(1) 위원회가 제 79754항에 명시된 규정들을 채택하고, 해당 프로젝트와 연관된 공익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고 공시했다.

(2) 프로젝트 신청자가 제 7975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은 공익 외의 혜택들을 얻을 각 단체와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각자의 분담금을 지불할 것임을 보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단체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 중 그 단체가 분담하는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3) 본 장에 따라 마련된 공익성 기부금이 해당 프로젝트에 명시된 공익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책임이 있는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의 공익이 본 장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함을 결론지은 후, 프로젝트 신청자가 제 79754에 확인된, 공익을 관리하는 각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었다.

(4)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공중에게 심사와 논평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5) 아래와 같은 추가 조건들 모두가 충족되었다:

(A)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다.

(B)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고, 모든 적용 법규 및 규제들에 일치하며, 생태계 건강을 복원하고 삼각주의 유익한 사용을 위한 수도 관리를 개선시키는 장기적 목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결론지었다.

1

(C)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환경 서류들이 완료되었고 필요한 모든 기타 연방, 주 및 지방의 승인과 인가, 계약을 받았다.

(b)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기금이 제공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세부 조항 (a)에 명시된 각 기준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c) 세부 조항 (a)에도 불구하고, 환경 서류의 완료와 프로젝트의 허가를 위해 본 장에 따라 기금이 제공될 수도 있다.

79756. (a) 제 79751항의 세부 조항 (c)에 기술된 프로젝트 외에, 본 장에 따라 기금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공익 비용 부담은 본 장에 따라 기금 지원되는 그 어떤 프로젝트이던 전체 비용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b) 본 장에 따라 기금 지원되는 프로젝트의 총 공익의 최소 50 퍼센트인 제 79753항의 세부 조항 (a) 제 (1)절에 기술된 생태계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 한, 어떤 프로젝트도 기금을 받을 수 없다.

79757. (a) 2022년 1월 1일까지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는 본 장에 따른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1) 모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환경 서류 초안이 공중의 검토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2) 위원회가 해당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고, 삼각주의 유익한 사용을 위해 생태계 건강을 복원하고 수도 관리를 개선시킨다는 장기 목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3) 프로젝트의 비공익성 비용 75 퍼센트 이상을 분담한다는 약속을 디렉터가 받았다.

(b) 만약 세부 조항 (a)의 준수가 소송 또는 규정들의 공표 실패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세부 조항 (a)에 있는 날짜는 위원회에 의하여 지연이 되는 기간 만큼의 후로 연장될 것이며, 본 장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약속되었던 기금은 소송이 완료되는 시기 또는 규정들이 공표되는 시기까지 계류될 것이다.

79758. 본 장에 의거하며 제 79751항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지표면 저류 프로젝트들은 제 1129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한 단위가 될 수도 있으며, 제 6부 제 3편(제 11100항을 위시하여) 에 따라 자금 조달, 취득, 건축, 운영, 및 유지 보수될 수 있다.

79759. (a) 2000년 8월 28일자로 CALFED 만-삼각주 결정 기록에 명시된 지표면 저류 프로젝트들의 설계, 취득 및 건축을 위해 배정된 기금들은, 본 장에 따라, 이들 프로젝트들을 설계, 취득 및 건축하려는 해당 수문 지역 내의 용수 지구 및 기타 지방 수도 지구들, 그리고 지방 정부들에 의해 설립된 지방 공동 권한 기관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다.

(b)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공동 권한 기관들은 자기관들의 담당 수문 지역들 내에 위치하지 않은 정부 제휴사 회원들을 비용 분담식 참여 또는 자본 참여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지표면 저류 프로젝트들의 자금 조달에 합류시킬 수도 있다. 정부법 제 6525항에 불구하고,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공동 권한 기관들은 영리 기업 또는 기타 민간 단체가 주주 및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영리 기업 또는 상호 수도 기업을 회원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부는 본 항에 따라 각 공동 권한 기관의 직무상의

구성원이 될 것이나, 부는 지표수 저수 프로젝트들의 경영, 관리 또는 운영을 통제할 수는 없다.

(c) 본 항에 따른 공동 권한 기관이 지표수 저수 프로젝트를 소유, 경영, 관리 및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는 이 지표수 저수 프로젝트의 소유, 경영, 관리 및 운영이 본 장에 명시된 목적들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따른다.

79760. (a)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을 승인하는데 있어, 주민들은 본 장의 규정들이 단일 목표, 또는 2014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법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하며,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통보받았고 이에 선언한다. 그렇기에, 유권자의 승인이 없이 의회가 본 장의 규정들을 수정하는 것은 본 법의 유권자 승인을 이끌어낸 의도와 계획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그러므로 본 장의 어떤 규정이든 의회에 의해 수정되는 것은 각각 상원 하원의회에서 삼분의 이의 찬성 투표를 받고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결론짓고 선언한다.

(b) 본 항은 본 장에 포함되지 않은 본 법의 기타 어떤 규정의 수정이, 본 법의 의도 및 계획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성립하여 유권자의 승인을 요하는지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사용되거나 이를 통제할 수 없다.

제 9장. 용수 재활용

79765. 총 칠억 이천 오백만 달러 (\$725,000,000)가 의회의 기금 전용에 따라 다음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용수 재활용 및 첨단 처리 기술 프로젝트들을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제공될 것이다:

(a) 처리, 저장, 운송 및 식수 및 비식수 재활용 프로젝트들을 위한 배급 시설들을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용수 재활용 프로젝트들.

(b) 지하수 및 해수 담수화 및 관련 처리, 저장, 운송 및 배급 시설들을 포함한, 그러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오염물 및 염분 제거 프로젝트들.

(c) 재활용수의 사용을 허락하기 위한 주거, 상업, 농업 및 공업 최종 사용자 재조절 프로젝트들을 제공하기 위한 전용 배급 인프라.

(d) 새로운 식수 재사용과 기타 염분 및 오염물 제거 기술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들.

(e) 수질을 개선시키는 다양한 혜택의 재활용수 프로젝트들.

(f)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보조금 신청 지원.

79766.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최소 50 퍼센트의 지방 비용 분담이 요구될 것이다. 이 비용 분담금은 빈곤 커뮤니티들이나 생활고 지역들에는 유예, 또는 삭감될 수 있다.

79767.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들은 다음 모두의 기준들을 고려해, 경쟁력에 기반해 선정될 것이다:

(a) 수도 공급 안정성 개선.



(b) 삼각주 또는 점유량으로부터의 취수 의존도 감소와 관련된 수질 및 생태계 혜택들.

(c) 향상된 식수질 또는 공급으로 인한 공공 보건 혜택들.

(d) 비용 효율성.

(e) 에너지 효율성 및 탄소가스 배출 영향.

(f) 북부 및 남부 California와 해안 및 내륙 지역들을 모두 포함한, 주 전체에 걸친 유자격 프로젝트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역적 할당.

79768.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프로그램들은 제 79140 및 79141 항에 따라 관리되는 용수 재활용 프로그램들이나, 제 79545 및 79547.2 항에 따라 관리되는 담수화 프로그램들과 일관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제 10장. 지하수 지속가능성

79770. 지하수 오염의 방지와 정화는 성공적인 지하수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하수 수질은 수도 공급자들이 다음의 사항들을 하기에 특히 중요하다:

(a) 지표수, 폭우, 재활용수 및 지역 수도 자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지하수 공급을 증강하는 프로젝트들의 기타 연계 사용을 통한 지하수 충전에 대한 투자 평가.

(b) 기후 변화에 의해 초래된 수문학 조건들의 변화에 적응.

(c) 주 내 수도 배달 시스템 내 수문학과 규제상의 가변성을 수용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지방 저장 시설들을 제공하기 위한 지하수 유역 개발 고려.

(d) 지하수 복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 평가.

79771. (a) 총 구역 달러 (\$900,000,000)가 의회의 기금 전용에 따라, 식수원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었었던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 또는 정화하는 프로젝트들을 위한 비용과, 경쟁식 보조금, 융자금으로 제공될 것이다. 본 항에 따라 전용되는 기금들은 커뮤니티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되었었던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공 보건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위해 주 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b) 프로젝트들은 다음의 기준들에 근거해 우선 순위가 부여될 것이다.

(1) 대체 수도의 처리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 또는 지하수가 오염으로 인해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용수 수입량의 증대를 포함하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피해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식수원이 받고있는 위협.

(2) 지하수 오염이 퍼져나가 인근 인구 지역들의 식수 공급과 저수 시설을 손상시킬 가능성.

(3) 완전히 실행되었을 경우 지방 수도 공급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잠재 역량.

(4) 취약하고, 사용량이 많은 지하수 유역들을 재충전하고 지하수 공급을 최적화할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잠재 역량.

(5) 프로젝트는 법원 또는 해당 규제 기관이 책임이 있는 단체를 아직 확인해내지 못한, 또는 확인된 책임 단체가 1980 연방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미 연방법 제 42권 제 9605항 (a)(8)(B))의 제 105항 (a)(8)(B)에 따라 제정된 국가 우선 순위 리스트에 등록된 지하수 오염이 있는 지정된 슈퍼펀드 지역들 내, 핵심 도시 수도 공급을

위한 수도 공급 안정성 개선 정화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장소의 오염을 해결한다.

(c)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기금은 지하수 저장 대수층의 오염에 책임이 있는 단체들로부터 되찾은 복원비용을 조금이라도 분담해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없으나, 책임 단체들로부터 되찾을 수 없는 비용들을 지불하는 데는 사용될 수도 있다. 지하수 저장 대수층의 복원을 위해 기금을 수여받는 단체들은 오염의 책임이 있는 단체들로부터 지하수 정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책임 단체들로부터 되찾은 기금들은 처리 및 복원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데만 사용될 수 있다.

79772. 제 79771 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팔천만 달러 (\$80,000,000)는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처리 및 복원 활동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제공될 것이다.

79773. 본 장에 따라 지원되는 기금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오염물들로는 질산염, 과염소산염,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비소, 셀레늄, 육가 크로뮴, 수은, PCE (퍼클로로에틸렌),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DCE (디클로로에탄), DCA (디클로로에탄), 1,2,3-TCP (트리클로로프로판), 사염화탄소, 1,4-디옥산, 1,4-디옥사시클로헥산, 니트로소디메틸아민, 브롬화물, 철분, 망간, 그리고 우라늄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79774. (a)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수여받는 프로젝트는 민간, 연방, 또는 지방 기금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한 추가 고려와 함께 경쟁식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절차에 의해 선정될 것이다.

(b) 본 장에 따라 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 중 50 퍼센트 이상의 지방 비용 분담이 요구될 것이다. 비용 분담 요구 조건은 빈곤 커뮤니티나 생활고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들에게는 면제되거나 삭감될 수 있다.

(c) 본 장의 목적을 위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기금을 받는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을 대는 커뮤니티의 지불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d)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기금들의 최소 10 퍼센트가 극빈 커뮤니티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 배정되어야 한다.

(e) 본 장에 의해 승인된 기금에는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술 지원 자금을 포함할 것이다. 본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소규모 및 빈곤 커뮤니티들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79775. 제 79771 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일억 달러 (\$100,000,000)가 제 6부 (제 10000 항을 위시하여) 하에 제정된 지하수 계획 규정들에 부합하는 지하수 계획 및 프로젝트들을 개발 및 실행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쟁식 보조금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1

제 11장. 홍수 관리

79780. 총 삼억 구천 오백만 달러 (\$395,000,000)가 의회의 기금 전용에 따라, 주 전체 홍수 관리 프로젝트들 및 활동들을 위해 수자원부와 센트럴 밸리 홍수 방지 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기금들은 공공 안전을 달성하는 다양한 혜택을 프로젝트들에 배정될 것이며,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강화도 포함한다. 수자원부는 제안 84와 1E의 수익금들과 함께 본 기금을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9781. 제 79780항에 의해 승인된 기금들 중, 이억 구천 오백만 달러 (\$295,000,000)가 삼각주 내 제방 고장 및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위해 제공될 것이다:

(a) 수정이 될 수 있는, 제 6부 제 9편 (제 12980 항을 위시하여)에 따른 삼각주 제방 유지보수 보조금 프로그램 하의 지방 지원.

(b) 제 6부 제 4.8편 제 2장 (제 12310 항을 위시하여) (수정이 될 수도 있으나)에 따른 특별 홍수 방지 프로젝트들.

(c) 지진, 홍수 또는 해수면 상승을 견딜 수 있게 삼각주 내 제방들의 탄성을 키워주는 제방 개선 프로젝트들.

(d) 비상 대응 및 수리 프로젝트들.

제 12장. 재정상의 규정

79785. (a) 제 79797항에 따라 발행된 상환채 액수를 포함하지 않은, 총 칠십 일억 이천만 달러 (\$7,120,000,000)의 공채, 그리고 법의 기타 규정들에 따른 본 부에 의거해 승인, 발행 및 전용되는 추가 공채들, 또는 필요에 따라 앞서 언급된 만큼의 액수가, 본 부에 나타난 목적들을 이행하는데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법 제 16724.5 항에 따라 일반 공채 비용 회전자금을 변상하기 위해 발행 및 매각될 수 있다. 공채는 판매될 때 California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여야 하며, 이로써 California 주의 충분한 신뢰와 신용이 원리금의 지급 기일이 될 때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대로 지불할 것임을 보증한다.

(b) 재무국장은 본 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공채들을 판매할 것이다. 공채들은 정부법 제 1673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는 결의안에 명시된 조건들에 따라 매각될 것이다.

79786. 본 부에 의해 승인된 공채들은 주 일반공채법 (정부법 제 2조 제 4부 제 3편 제 4장 (제 16720항을 위시하여))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준비, 작성, 발행, 판매, 지불 및 상환될 것이며, 수정될 수도 있는 해당 법의 모든 규정들은, 정부법 제 16727의 세부 조항 (a)와 (b)를 제외하고(이들 세부 조항들이 본 부의 기타 다른 규정들과 상충되지 않는 한), 본 부와 공채들에 적용될 것이다.

79787. (a) 주 일반공채법 (정부법 제 2조 제 4부 제 3편 제 4장 (제 16720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본 부에 의해 승인되는 공채들의 발행과 판매를 승인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창설된다. 본 부의 목적을 위해, 수질, 수도 공급 및 인프라 개선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공채법에 사용된 명칭 그대로 "위원회"로 불린다.

(b) 위원회는 재정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회계감사원장으로 구성된다. 법의 다른 규정들에 불구하고, 어떤 구성원이든, 본인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구성원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c) 재무국장이 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한다.

(d)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다.

79788. 위원회는 본 부에 명시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해 본 부에 의해 승인된 공채들의 발행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럴 경우 발행 및 매각되어야 할 공채 금액도 결정해야 한다. 계속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수행하도록 공채의 연속 발행이 승인되어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 승인을 받은 모든 공채가 어느 한 시점에 판매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79789. 주 일반공채법의 목적을 위해, "이사회"는 정부법 제 167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장관을 의미한다.

79790. 주의 정규 세입에 더하여, 해마다 공채의 원리금을 지불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 다른 세입을 징수할 때 함께 징수해야 한다. 그러한 추가적인 합계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입 징수에 관한 직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79791. 정부법 제 13340항에 불구하고, 본 부의 목적을 위해 이로써 국고에 있는 일반 기금으로부터 전용되는 금액은 다음의 합계와 동일할 것이다:

(a) 본 부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들의 원금과 이자의 지급 기일이 되어 지불해야 할 때 이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데 연간 필요한 총액.

(b) 제 79794항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전용되는 총액.

79792. 이사회는 정부법 제 16312 항에 따라 본 부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에 공동자금 투자 계좌로부터 제 79794항에 따라 인출된 금액을 제하고 용자금을 대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된 액수는 본 부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결의안에 의해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공채들의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사회는 이 용자금을 획득 및 상환하기 위해 공동자금 투자 위원회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들을 작성해야 한다. 용자된 자금은 본 부에 따라 배정될 기금에 입금되어야 한다.

79793. 본 부의 다른 규정들, 또는 주 일반공채법에도 불구하고, 만약 재무국장이 지정된 조건 하에 연방 세금 용도로 총수입에서 채권에 대한 이자가 제외하거나, 어떠한 연방 세금 혜택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채권 변호사 의견이 포함된 공채를 판매하면, 재무국장은 투자된 공채 수익금과 그 수익금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들 수익금과

이익금을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리베이트, 벌금 또는 기타 납부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거나, 투자와 관련해 다른 조치를 취해, 본 주의 기금들을 대신해 연방법에 따라 이 채권들의 세금 면제 자격을 유지하고 기타 다른 이익들을 얻기 위해 연방법 하에 요구되거나 권장될 수도 있는 이들 채권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79794. 본 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재정국장은 제 79792 항에 따라 차용된 금액을 제하고, 본 부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가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들의 액수를 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본 항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본 부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채의 판매에서 얻어진 수익금으로부터 공동자금 투자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변 이율의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79795. 본 부에 따라 판매된 공채들에 대한 프리미엄과 미수이자로 부터 파생된,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기금에 유보되어야 하고, 채권 이자 비용으로 지불하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어야 하며, 단, 프리미엄에서 파생된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기 이전에 채권 발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유보되거나 사용될 수도 있다.

79796. 정부법 제 2조 제 4부 제 3편 제 4장 (제 16720 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프리미엄을 포함한, 만약 있는 경우, 채권 발행 비용은 채권 수익금으로부터 지불되어야 한다. 채권 판매로부터 받는 프리미엄에서 채권 발행 비용이 지불될 수 없는 경우, 이들 비용은 본 부를 통한 해당 채권 판매에 의해 기금 지원을 받는 각 프로그램들에 의해 비례하여 분담되어야 한다.

79797. 본 부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되는 공채들은 주 일반공채법의 일부인 정부법 제 2조 제 4부 제 3편 제 4장의 제 6조 (제 16780 항을 위시하여)에 따라 환불될 수 있다. 본 부 하에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 주 유권자들의 승인에는 본 부에 의해 최초 발행된 공채들이나 이전에 발행된 차환채권을 환불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승인이 포함된다.

79798. 본 부에 의해 승인된 채권들의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 13항 B에 그 용어가 사용된 바와 같이 "세금 수익"이 아니며, 이들 수익금의 지출은 해당 항이 부과하는 한도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

# California주 선거

California주 법률에 따라 유권자 지명 공직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동일한 투표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은 주 의원, 연방 하원의원, 주 헌법상 공직입니다.

공개 예비선거와 총선거 모두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입한 선호 정당에 관계없이 어느 후보자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 후보자가 (선호 정당에 관계없이) 총 득표수에 관계 없이 총선거에 나갑니다. 한 후보자가 과반수 (50 퍼센트 + 1)를 득표해도 총선거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공개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단 둘 뿐이라도, 공직에 대한 총선거는 필요합니다.

California주의 공개 예비선거 제도는 미국 대통령, 카운티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alifornia주 법률에 따라 본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유권자 지명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를 공식 지명할 수 없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주민이 추천한 후보자이며,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공식 지명자가 아닙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본인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또는 선호 정당이 없음을 투표지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는 후보자 본인의 의지로 선택해야 하며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공개됩니다. 이는 후보자가 명시한 정당의 지명이나 지지를 받는다거나 정당과 후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므로, 유권자들이 지명한 후보자는 정당의 공식 지명 후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의 공식 지지를 받는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를 카운티 견본 투표지 책자에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해당 공직에 선출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라면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 후보자는 같은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더라도 유권자 지명 공직자 선출을 위한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 명에 속하지 않는 한, 정당은 자기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후보자를 총선거에 내보낼 수 없습니다.

## 무소속 공직

정당은 예비선거에서 무소속 공직 후보자를 공식 지명할 수 없으며, 예비선거 후보자는 총선거에서 특정 공직에 대한 정당의 공식 후보 지명자가 아닙니다. 무소속 공직에 지명된 후보자는 본인의 선호 정당이나 선호 정당이 없음을 투표지에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두명은 무소속 공직을 위한 총선거에 나가게 됩니다.

## 선거 절차: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ourts.ca.gov](http://www.courts.ca.gov)를 방문하십시오.

California주 법률에 따라 본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California주 헌법에 따라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는 유권자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권자는 각 판사의 임용 여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합니다. 이 판사직들은 무소속입니다.

누구든 항소법원 판사가 되려면 사전에 주지사가 후보자의 이름을 일반 주민과 변호사로 구성된 판사 내정자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과 자격을 철저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 후보자 평가서를 주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주지사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서를 검토하여 후보자를 공식 지명하는데, 그의 자격은 일반 공개 평가 후 판사 임용 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이 위원회는 California주대법원장과 California 법무부장관, 그리고 항소법원의 수석재판장으로 구성됩니다. 판사 임용 위원회는 지명을 승인하거나 기각해야 합니다. 승인 받은 사람만 판사가 됩니다.

승인 받은 판사는 취임한 뒤 다음 주지사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각 임기가 끝날 때마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alifornia 주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의 임기는 12년입니다. 판사는 판사 임용 위원회에서 다음 주지사 선거까지만 승인되며, 그 때 전임자의 임기가 남아 있으면 (사년 또는 팔년) 유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조항 제9083조)

## 카운티 선거 사무소

### 알라메다 카운티

(510) 272-6933 또는 (510) 272-6973

[www.acgov.org/rov](http://www.acgov.org/rov)

### 알파인 카운티

(530) 694-2281

[www.alpinecountyca.gov](http://www.alpinecountyca.gov)

### 아마도르 카운티

(209) 223-6465

[www.amadorgov.org](http://www.amadorgov.org)

### 버트 카운티

(530) 538-7761 또는

(800) 894-7761 (버트 카운티만 해당)

<http://buttevotes.net>

### 칼라베라스 카운티

(209) 754-6376

[www.elections.calaverasgov.us](http://www.elections.calaverasgov.us)

### 클루사 카운티

(530) 458-0500 또는 (877) 458-0501

[www.countyofcolusa.org/elections](http://www.countyofcolusa.org/elections)

###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925) 335-7800 또는 (925) 335-7874

[www.cocovote.us](http://www.cocovote.us)

### 델노테 카운티

(707) 464-7216

[www.co.del-norte.ca.us](http://www.co.del-norte.ca.us)

### 엘도라도 카운티

(530) 621-7480 또는 (800) 730-4322

[www.edcgov.us/elections](http://www.edcgov.us/elections)

### 프레즈노 카운티

(559) 600-VOTE (8683)

[www.co.fresno.ca.us/elections](http://www.co.fresno.ca.us/elections)

### 글렌 카운티

(530) 934-6414

[www.countyofglenn.net/govt/departments/elections](http://www.countyofglenn.net/govt/departments/elections)

### 험볼트 카운티

(707) 445-7481

[www.co.humboldt.ca.us/election](http://www.co.humboldt.ca.us/election)

### 임페리얼 카운티

(760) 482-4226 또는 (760) 482-4285

[www.co.imperial.ca.us/elections](http://www.co.imperial.ca.us/elections)

### 이노카운티

(760) 878-0224 또는 (760) 878-0410

[www.inyocounty.us/Recorder/Clerk-Recorder.html](http://www.inyocounty.us/Recorder/Clerk-Recorder.html)

### 컨 카운티

(661) 868-3590

[www.co.kern.ca.us/elections](http://www.co.kern.ca.us/elections)

### 킹스 카운티

(559) 852-4401

[www.countyofkings.com](http://www.countyofkings.com)

### 레이크 카운티

(707) 263-2372

[www.co.lake.ca.us/Government/Directory/Rov.htm](http://www.co.lake.ca.us/Government/Directory/Rov.htm)

### 라센 카운티

(530) 251-8217 또는 (530) 251-8352

[www.lassencounty.org](http://www.lassencounty.org)

### Los Angeles 카운티

(800) 815-2666

[www.lavote.net](http://www.lavote.net)

### 마데라 카운티

(559) 675-7720 또는 (800) 435-0509

[www.madera-county.com](http://www.madera-county.com)

### 마린 카운티

(415) 473-6456

[www.marinvotes.org](http://www.marinvotes.org)

### 마리포사 카운티

(209) 966-2007

[www.mariposacounty.org](http://www.mariposacounty.org)

### 멘도시노 카운티

(707) 234-6819

[www.co.mendocino.ca.us/lacr](http://www.co.mendocino.ca.us/lacr)

### 머세드 카운티

(209) 385-7541 또는 (800) 561-0619

[www.mercedelections.org](http://www.mercedelections.org)

### 모독 카운티

(530) 233-6205

[www.co.modoc.ca.us](http://www.co.modoc.ca.us)

### 모노 카운티

(760) 932-5537 또는 (760) 932-5534

[www.monocounty.ca.gov](http://www.monocounty.ca.gov)

### 몬터레이 카운티

(831) 796-1499 또는 (866) 887-9274

[www.montereycountyelections.us](http://www.montereycountyelections.us)

### 나파 카운티

(707) 253-4321 또는 (707) 253-4374

[www.countyofnapa.org](http://www.countyofnapa.org)

### 네바다 카운티

(530) 265-1298

[www.mynevadacounty.com/ncelections](http://www.mynevadacounty.com/ncelections)

### 오렌지 카운티

(714) 567-7600

[www.ocvote.com](http://www.ocvote.com)

### 플레이서 카운티

(530) 886-5650 또는 (800) 824-8683

[www.placerelections.com](http://www.placerelections.com)

### 플루마스 카운티

(530) 283-6256

[www.countyofplumas.com](http://www.countyofplumas.com)

### 리버사이드 카운티

(951) 486-7200

[www.voteinfo.net](http://www.voteinfo.net)

### 새크라멘토 카운티

(916) 875-6451

[www.elections.saccounty.net](http://www.elections.saccounty.net)

### 샌베니토 카운티

(831) 636-4016 또는 (877) 777-4017

[www.sbcvvote.us](http://www.sbcvvote.us)

### 샌버나디노 카운티

(909) 387-8300

[www.sbcountyelections.com](http://www.sbcountyelections.com)

### 샌디에고 카운티

(858) 565-5800 또는 (800) 696-0136

[www.sdvote.com](http://www.sdvote.com)

###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415) 554-4375

[www.sfelections.org](http://www.sfelections.org)

### 샌호야킨 카운티

(209) 468-2885

[www.sjcrov.org](http://www.sjcrov.org)

###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805) 781-5228 또는 (805) 781-5080

[www.slovote.com](http://www.slovote.com)

### 샌마테오 카운티

(650) 312-5222

[www.shapethefuture.org](http://www.shapethefuture.org)

### 산타바바라 카운티

(800) SBC-VOTE 또는 (805) 568-2200

[www.sbcvvote.com](http://www.sbcvvote.com)

### 산타클라라 카운티

(408) 299-VOTE (8683)

[www.sccvvote.org](http://www.sccvvote.org)

### 산타크루즈 카운티

(831) 454-2060 또는 (866) 282-5900

[www.votescount.com](http://www.votescount.com)

### 샤스타 카운티

(530) 225-5730

[www.elections.co.shasta.ca.us](http://www.elections.co.shasta.ca.us)

### 시에라 카운티

(530) 289-3295

[www.sierracounty.ca.gov](http://www.sierracounty.ca.gov)

### 시스키유 카운티

(530) 842-8084 또는

(888) 854-2000 EXT. 8084

[www.sisqvotes.org](http://www.sisqvotes.org)

### 솔라노 카운티

(707) 784-6675

[www.solanocounty.com/elections](http://www.solanocounty.com/elections)

### 소노마 카운티

(707) 565-6800 또는 (800) 750-VOTE (8683)

[vote.sonoma-county.org](http://vote.sonoma-county.org)

### 스테니스슬라우스 카운티

(209) 525-5200

[www.stanvvote.com](http://www.stanvvote.com)

### 서터 카운티

(530) 822-7122

[www.suttercounty.org/elections](http://www.suttercounty.org/elections)

### 테하마 카운티

(530) 527-8190 또는 (530) 527-0454

[www.co.tehama.ca.us](http://www.co.tehama.ca.us)

### 트리니티 카운티

(530) 623-1220

[www.trinitycounty.org](http://www.trinitycounty.org)

### 툴레어 카운티

(559) 624-7300 또는 (559) 624-7302

[www.tularecounty.ca.gov/registrarfrovoters](http://www.tularecounty.ca.gov/registrarfrovoters)

### 투올러미 카운티

(209) 533-5570

[www.tuolumnecounty.ca.gov](http://www.tuolumnecounty.ca.gov)

### 벤처라 카운티

(805) 654-2664

[venturavote.org](http://venturavote.org)

### 올로 카운티

(530) 666-8133 또는 (800) 649-9943

[www.yoloelections.org](http://www.yoloelections.org)

### 유바 카운티

(530) 749-7855

[www.yubaelections.org](http://www.yubaelections.org)

# 유권자 권리장전

1. 유효 등록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 등록 유권자란 이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국민 중 중범죄 유죄 판결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상태에 있지 않고 현 거주지 주소로 등록된 유권자를 말합니다.
2. 자기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없으면 임시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투표소 문을 닫기 전에 투표소 안에 있었거나 줄 서 있었다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투표를 완료하기 전에 실수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언제든지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새 투표지와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자도 선거일 투표 마감 전에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 담당관에게 반환하면 새 투표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도움을 받지 않고 투표할 수 없으면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기표한 우편 투표지는 카운티의 어느 선거구에나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의 선거구에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제작하기에 충분한 수의 주민이 거주한다면,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하고 선거 과정을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 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받거나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되어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질문이 공무 집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 공무원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 불법 또는 부정 행위를 지방 선거 공무원이나 주 총무처장관실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러한 권리 중 어느 것이 무시되거나 부정 선거 또는 불법 행위를 알게 되면, 주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에 신고하십시오.**

---

선거 공무원은 투표 절차에 관한 공식 정보(투표소 위치, 투표지에 나오는 안건과 후보자 등)를 보내기 위해 유권자 등록 진술서상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률으로 금지되어 있고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 총무처장관의 결정에 따라 공직 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각종 선거, 학술, 언론, 정치, 정부 관련 인사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카드에 나온 운전면허 및 사회보장 번호 또는 유권자 서명은 이런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이용에 관한 질문이 있거나 그 정보의 오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고 싶으면, 주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직통전화 (866) 575-1558으로 연락하십시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는 유권자 등록 상태를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 총무처장관의 가정안전(Safe at Home) 프로그램 무료 전화 (877) 322-5227로 문의하거나 [www.sos.ca.gov](http://www.sos.ca.gov) 를 참조하십시오.



★ ★  
**추가 자료** ★ ★  
여기에는 첫 번째 유권자 안내서가 인쇄된 후 투표지에 추가된 제안 1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CALIFORNIA**주  
**총선거**  
www.voterguide.sos.ca.gov

For additional copies of the Voter Information Guide in English, please contact your county elections office or call (800) 345-VOTE (8683). For TTY/TDD, call (800) 833-8683.

Para obtener copias adicionales de la Guía de Información para el Votante en español, póngase en contacto con la oficina electoral de su condado o llame al (800) 232-VOTA (8682).

如需索取額外的中文選民資訊指南，請與您的縣立選舉辦事處聯繫或致電(800) 339-2857。

हिन्दी में मतदाता जानकारी मार्गदर्शिका की अतिरिक्त प्रतियां प्राप्त करने के लिए, कृपया अपने काउंटी चुनाव कार्यालय से संपर्क करें या इस नंबर पर फोन करें (888) 345-2692।

投票情報ガイドの日本語版をご希望の場合は、最寄の郡選挙事務所にお問い合わせになるか(800) 339-2865にお電話ください。

###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유권자 등록 마감일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됩니다.

សំរាប់សំណើបន្ថែម នៃព័ត៌មានណែនាំអ្នកបោះឆ្នោត ជាភាសាខ្មែរ សូមទាក់ទងការិយាល័យបោះឆ្នោត ខោនធីរបស់អ្នក ឬទូរស័ព្ទ (888) 345-4917។

한국어로 된 유권자 정보 지침의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실로 연락하거나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866) 575-1558

Para sa mga karagdagang kopya ng Patnubay na Impormasyon Para sa Botante sa Tagalog, mangyaring makipag-ugnayan sa opisina sa mga halalan ng inyong county o tumawag sa (800) 339-2957.

สำหรับสำเนาเพิ่มเติมของคู่มือสำหรับผู้ออกเสียงเลือกตั้ง 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 กรุณาติดต่อสำนักงานการเลือกตั้ง ประจำเขตสมณฑลของคุณ หรือโทรศัพท์ถึง (855) 345-3933

Muốn có thêm Tập Hướng Dẫn Cử Tri bằng Việt Ngữ, xin liên lạc với văn phòng bầu cử quận của quý vị hoặc gọi số (800) 339-8163.

